

통 상 법 률

목 차

2022년 제3호 (통권 제156호)

◆ 논 단

1.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
-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한 창 완 / 3

◆ 해외동향

1. 제12차 각료회의를 통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WTO,
남은 과제는? 안 홍 상 / 46
2. 제55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논의 동향
..... 최승은·임세영 / 55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₁₎

-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한 창 완^{**}

*논문접수 : 2022. 8. 19. *심사개시 : 2022. 8. 23. *게재확정 : 2022. 9. 26.

〈 목 차 〉

· 들어가면서	· 싱가포르 사례의 검토
· 취소절차 일반	1. 중재판정의 요지
1. 취소절차의 개요	2. 싱가포르 법원의 판단
2. 영국의 경우	· 평가와 시사점
3. 싱가포르의 경우	1. 취소사유로서의 관할권 문제
4. 우리나라의 경우	2. 국제법 해석 원칙에 대한 이해
· 영국 사례의 검토	3. 사법심사 적격성
1. <i>Occidental v. Ecuador</i> 사건	4. 심사기준
2. <i>EMV v Czech Republic</i> 사건	· 마치며

I. 들어가면서

국제투자중재(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판정은 상사중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칙

적으로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판정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상사중재와 달리,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불복절차는 세계

* 2022년 8월 11일 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판례연구회에서의 발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제 당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 선생님과 투고과정에서 심사하여 주신 세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본고의 내용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무관하다는 점도 밝혀둔다.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변호사(한국 및 미국 일리노이주), 법학박사.

1) 국제연합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 국제투자분쟁사건의 항소제도 도입과 항소심을 포함한 상설투자법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약 이 논의가 성공적인 결실을 본다면 앞으로는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한 항소 등 불복절차가 존재하게 될 수도 있다.

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ICSID 협약”)에 따라 진행된 사건과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등 다른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²⁾

ICSID 협약에 따라 진행된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취소절차³⁾가 있고,⁴⁾ 중재지 법원에 의한 취소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⁵⁾ 이에 반하여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해 진행된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 적용되고, 중재지 법원에 의한 취소절차⁶⁾ 내지 집행지 법원에 의한 승인·집행절차⁷⁾가 별도로 존재한다.⁸⁾

- 2)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투자협정(양자간·다자간 투자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내 투자 챗터)은 청구인(투자자)에게 어떤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6조 제4항은 청구인이 ICSID 협약 또는 UNCITRAL 중재규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3) ICSID 협약 제52조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부 구성원의 부패,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및 이유 불기재 5가지로 취소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판정 선고 후 120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ICSID 취소절차의 개관에 대해서는 Rudolf Dolzer &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79-287; Yannick Radi, *Rul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468-480; Katia Yannaca-Small, “Annulment of ICSID Awards: Is it Enough or Is Appeal around the Corner?,” in *Arbitr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econd Edition, edited by Katia Yannaca-Small, 727-75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Hi-Taek Shin, “Annulment,” in *Build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First 50 Years of ICSID*, edited by Meg Kinnear, Geraldin R. Fischer, Jara Minguez Almeida, Luisa Fernanda Torres & Mairé Uran Bidegain, 699-714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Silvia M. Marchili & Sara McBrearty, “Annulment of ICSID Awards: Recent Trends,” in *ICSID Convention after 50 Years: Unsettled Issues*, edited by Crina Baltag, 427-451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7) 참조.
- 5) ICSID 가입국은 ICSID 협약에 따라 판정을 승인 및 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권면제 등 관습국제법상 특권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 6) 중재지 법원에서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재지의 국내법에 따라 불복수단의 구체적인 형태, 내용 및 효과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편의상 중재지의 국내법에 따른 불복을 모두 취소절차라고 칭하겠다.
- 7)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개념과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 방안,”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2012년), 692-715면 참조.
- 8) C. L. Lim, Jean Ho and Martins Paparinski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538. 패소 당사자 입장에서 취소절차와 집행절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개정판 (박영사, 2018년), 259면의 다음 설명 참조. “..... 패소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중재판정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가 승소 당사자가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중재판정을 실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ICSID 협약에 따른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원의 관여가 적지만, ICSID 협약이 아닌 다른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ICSID 협약에 의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절차나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고, ICSID 협약이 아닌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따른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한 중재지 법원의 취소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상사중재와 마찬가지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투자중재에서 영국이 중재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 최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중립적인 중재지로서 싱가포르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⁹⁾

본 논문은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사례 그 자체를 논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제투자중재 취소절차에서 주로 문제 될 수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의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찾

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재지 법원에 의한 취소절차 일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순서대로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몇 가지 언급한 후 마무리하겠다. 사실 국제투자중재에서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투자협정의 해석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헤이그, 스위스 제네바, 미국 워싱턴 디시, 스웨덴 스톡홀름 등도 중재지로 활용되나, 이들 사례에 대한 검토는 차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II. 취소절차 일반

1. 취소절차의 개요

ICSID 협약에 따른 국제투자중재와 달리 UNCITRAL 중재규칙이나 기타 중재규칙에 따른 국제투자중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정 취소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약이 없다. 다만,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호 후단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¹⁰⁾([The award] has been set aside or

9) 한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재지이자 세계적으로도 영국 런던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기 있는 중재지이다. <https://arbitration.qmul.ac.uk/research/2021-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 (2022년 8월 9일 최종 확인)

10) 이 번역은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의 그것을 원용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목영준·최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를 집행거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중재지의 국내법에 따라 판정의 취소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¹¹⁾ 이때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was made)는 중재지를,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the country under the law of which the award was made)에서의 법령은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말한다.¹²⁾ 하나 유의할 점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호에서 중재지의 법이나 절차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지나 중재절차법이 속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법원은 취소신청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중

재지 또는 중재절차법이 속하는 국가가 아니면서 중재에 적용되는 실질법이 속하는 국가의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¹³⁾

뉴욕협약은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가능성만을 간접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국제투자중재 판정¹⁴⁾에 대하여 중재지에서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중재지의 국내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본안에 관한 사유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역시 중재지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¹⁵⁾ 본 논문은 영국, 싱가포르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 처지에서의 시사점을 확인하

승재, 앞의 책, 251면은 “중재판정이 그 영토 내에서 내려진 국가 또는 중재판정이 그 절차법에 따라 내려진 국가”, 같은 책 272면은 “그 영토 내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같은 책 328면은 “중재판정이, 그것이 내려진 국가 또는 그 절차법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문본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한, 뉴욕협약에 관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newyorkconvention.org/>)에 게시된 국문본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라고 번역한다. 석광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724면은 외교부 홈페이지와 뉴욕협약 홈페이지의 위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 11) 이 조항 입안 당시의 논의에 대해서는 Franco Ferrari & Friedrich Rosenfel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Comparative Introducti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21), 170-172 참조.
- 12) Nadia Darwazeh, “Article V(1)(e),”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edited by Herbert Kronke, Patricia Nacimiento, Dirk Otto & Nicola Christine Port, 301-344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320-324. 우리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참조.
- 1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 14) 이하부터 ‘국제투자중재 판정’은 ICSID 협약이 아닌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의한 것(비-ICSID 판정)을 지칭한다.
- 15) 조약은 아니지만 1985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이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고자 하는 것이므로 세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한 취소사유와 그 효과만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2. 영국의 경우

영국은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관할권(substantive jurisdiction)이 없거나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잘못(serious irregularity)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⁶⁾ 구체적으로, 영국 중재법(UK Arbitration Act 1996) 제67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권에 관한 판정과 본안에 관한 판정에 각각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중재판정을 확인, 변경,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실질적 관할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영국 중재법 제30조 제1항 (a)부터 (c)까지 정하고 있다(중재법 제82조 제1항). 이에 따르면 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지, ② 중재판정부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③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해당하는지가 실질적 관할권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법 제68조는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¹⁷⁾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 사유로는 ① 중재판정부가 중재법 제33조에서 정한 중재판정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③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합의와 달리 중재절차를 진행한 경우, ④ 중재판정부가 제시된 주장들을 모두 판단하지 않은 경우, ⑤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기관 등이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⑥ 중재판정의 효력이 불명확·모호한 경우, ⑦ 중재판정이 사기에 의해 얻어졌거나 중재판정 또는 그에 이르는 과정이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⑧ 중재판정의 형식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⑨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기관에 의하여 중재판정 또는 그 절차에

있다. 모델법 그 자체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고, 각국이 이를 국내법에서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국가가 모두 모델법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영국은 모델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국내법원의 관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정한다.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제1호 (2007년), 224-225면; Veijo Heiskanen and Laura Halonen, “Post-Award Remedies,” in *Litiga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 Practitioner's Guide*, edited by Chiara Giorgetti, 497-526 (Leiden: Koninklijke Brill, 2014): 503 참조.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민경,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4년), 27-66면 참조.

17) 그러므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불복할 수 없다.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판정부에 환송하거나 취소 또는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재법 제69조는 당사자가 이 권리를 배제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이상¹⁸⁾ 중재판정에 관한 법률문제(question of law)에 대해 영국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문제는 영국법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법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는 없다.¹⁹⁾

3.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²⁰⁾ 제24조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모델법")²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두 가지를 더하여,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싱가포르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 (a)는 취소신청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유로 ①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거나, 중재합의가 준거법 또는 준거법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 법에 의해 무효인 사실, ② 취소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이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중재판정이 중재부탁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부탁범위를 넘은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단, 중재부탁사항과 부탁되지 않은 사항이 분리될 수 있다면 후자만 취소),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델법 제34조 제2항 (b)는 법원이 ①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싱가포르

18) 다양한 기관의 중재규칙은 항소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19) 이처럼 영국 중재법 제67조, 68조는 취소사유를, 제69조는 항소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다. 취소는 관할, 절차, 공공정책 등을 이유로 판정의 실효를 구하지만, 항소는 법률문제 등 사안의 실체적 판단과 관련된 문제를 불복사유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20)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지 않는 영국 중재법과 달리 싱가포르는 국제중재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21) 이를 “표준법” 또는 “모범법안”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모델법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므로 편의상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2) 싱가포르 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는 태도이다. 중재를 촉진하고 증진하려는 사법정책(unequivocal judicial policy of facilitating and promoting arbitration)이 싱가포르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이다. *Tjong Very Sumito and Others v Antig Investments Pte Ltd*, [2009] SGCA 41, para. 28.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② 중재판정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²³⁾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중재법 제24조는 ① 판정이 사기 또는 부패에 의해 얻어진 경우, ② 판정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적 정의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²⁴⁾ 역시 취소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법 제36조가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유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유로 나눌 수 있다. 이는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⁵⁾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는 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²⁶⁾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②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③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 않았

23) 싱가포르 법원은 공공질서 위배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승인거부사유에 대한 논의이기는 하나 Yu-Jin Tay, “Singapore,” in *Enforcement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wards*, edited by Hulien Fouret, 387-402 (London: Globe Business Publishing Ltd, 2015): 396-397 참조.

24) 싱가포르 고등법원(Singapore High Court)은 2020년 당사자 일방의 증인신문 신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한 패소 판정이 자연적 정의에 반하고 이로 인해 패소당사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그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CBP v CBS* [2020] SGHC 23. 항소법원(Singapore Court of Appeal)은 2021년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CBP v CBS* [2021] SGCA 4. 항소법원의 다음과 같은 설시 참조. “We are satisfied that the arbitrator’s denial of the entirety of the witness evidence from the Buyer constitutes a breach of natural justice. Whilst it is correct that the courts would generally accord a margin of deference to the tribunal’s decisions, especially on procedural matters, this is a clear case of a serious breach of the rules of natural justice and to decide otherwise would be to reduce the content of those rules to a vanishing point.” *Ibid.*, para. 79. 싱가포르 법원의 영문 명칭이 High Court, Court of Appeal이므로 편의상 각각 고등법원, 항소법원으로 번역하였으나 실제로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1심과 2심이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영국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25) 김갑유 대표집필,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년), 317면;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225면;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2호 (2012년), 185면.

26) 우리 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우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므로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6조, 제30조에 따라 사람은 그 본국법, 법인 또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설립의 준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영준·최승재, 앞의 책, 275-276면.

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사실 중 하나를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①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²⁷⁾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중재인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각하한 중재판정은 우리 중재법상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본안에 대하여 중국적 판단을 내린 중재판정만이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각하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할항변절차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중재신청이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였거나 본안 절차에까지 나아가더라도 결국 관할권을 인정되지 않은 판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을 것이다. 관할권이 인정되어 본안에서 패소한 피청구

국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만 중국성과 본안성이 인정될 수 있다. 관할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본안 판단에서 승소한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물론 관할권의 존재가 인정되었지만, 본안 청구 일부만 인용된 경우 청구인 역시 불복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심사가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이 관할권에 관한 중재판정부 판단을 다룰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취소소송 제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국제투자중재에서는 절차를 분리하여 본안과 별개로 관할권 존부를 먼저 판단하기도 하는데, 관할권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본안의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한 경우 즉 사실관계가 겹치면 중재판정부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관할권 판단을 본안 단계로 보류하여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비적으로 본안 판단까지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다.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설사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을

27) 중재판정이 대법원 판례들과 해석을 달리하여 그 결론이 다르다는 사정은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28)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 판결. 또한, 김갑유 대표집필, 앞의 책, 289-290면; 정선주,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대상,”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 (2022년), 319-320면 참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본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므로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한 결론이 형평에 부합하는지와는 별개로, 중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관한 문언의 해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에 대해 관할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²⁹⁾ 이 견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III. 영국 사례의 검토

1. *Occidental v. Ecuador* 사건

가. 사실관계

미국 기업인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Occidental”)은 1999년 에콰도르의 공기업인 Petroecuador와 사이에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독점 탐

사 및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ccidental은 위 계약에 따라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생산된 유류 중 일부를 취득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Occidental은 유류 생산을 위해 에콰도르 국내·외에서 일정한 물품과 용역을 구입 및 수입하였고, 이러한 구입 및 수입 과정에서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초기에는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으나, 2001년 8월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종전에 환급한 부가가치세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Occidental은 2002년 11월 에콰도르의 행위가 미국-에콰도르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상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적용규칙은 UNCITRAL 중재규칙(1976), 중재지는 영국 런던³⁰⁾으로 각각 정해졌다.

나. 중재판정의 내용

에콰도르는 투자협정 제10조³¹⁾가 투자계약, 투자인가, 송금 및 수용과 같은 예외

29) 정선주, 앞의 논문, 315-317면 참조.

30) 분쟁 당사자들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고, 중재판정부가 적용 중재규칙인 UNCITRAL 중재규칙(1976) 제16조에 따라 중재지를 영국 런던으로 지정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1976) 제1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중재지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부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중재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upon the place where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such place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arbitration”).

사유를 제외하면 조세 관련 문제에 대해 협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와 그 환급은 조세에 관한 문제로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³²⁾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우선 제10조의 문언과 협상기록 등을 검토한 후 조세 관련 문제가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Occidental과 Petroecuador 간의 계약이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10조 제2항 (c)에서 예외사유로 정한 투자계약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조세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항변을 기각하고 관할권을 인정하였다.³³⁾ 중재판정부는 본안에서 피청구국 에콰도르의 행위가 내국민대우의무,³⁴⁾ 공정·공평대우의무³⁵⁾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사법심사 적격성(justiciability)에 관한 영국 법원의 판단

(1) Occidental의 주장

에콰도르는 2004년 8월 영국 고등법원 (High Court of Justice)³⁶⁾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에콰도르는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유월하여 판단하였고, 중재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두 가지 사유를 내세웠다.³⁷⁾ 이에 대해 Occidental은

31) 협정 제10조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ith respect to its tax policies, each Party should strive to accord fairness and equity in the treatment
2. Nevertheless,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and in particular Articles VI and VII, shall apply to matter of taxation only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 (a) expropriation ...
 - (b) transfer ...
 - (c) the observance and enforcement of terms of an investment agreement or authorization ...

32)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LCIA Case No. UN3467, Final Award, paras. 37, 64-65.

33) *Ibid.*, paras. 68-77.

34) *Ibid.*, paras. 173-177.

35) *Ibid.*, paras. 183-187.

36)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사례와 마찬가지로, 명칭은 High Court이지만 취소소송의 1심에 해당한다. 편의상 고등법원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37) *The Republic of Ecuador v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2005] EWHC 774, 29 April 2005, paras. 25-28.

취소소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국 법원이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인 투자협정을 해석하여야 하는데, 영국법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이 문제가 되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³⁸⁾ 영국이 에콰도르-미국 간 투자협정의 당사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영국 국내법에도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 *Occidental*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다투는 에콰도르의 주장을 판단한다면 그 쟁점을 다시 처음부터 판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Occidental*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협정의 범위, 효과 및 적용 등을 해석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협상기록, 관련 문서 및 자료 뿐만 아니라 영국이 당사국이 아닌 협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협정의 타방당사국인 미국의 관여 없이 협정을 해석해야 하는데, 영국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영국 법원의 해석은 에콰도르 뿐만 아니라 협정의 타방당사국인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으면서 영국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협정들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쟁점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외국의 외교적 문제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영국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법원은 영국 국내법에 편입되지 않은 조약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국 법원이 취소소송에 관하여 판단하면 ① 영국이 당사자가 아니거나 국내법에 편입되지 않은 조약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고, ② 국제법이 적용되는 미국과 에콰도르 간의 합의를 판단하게 되며, ③ 협정의 타방당사국인 미국이 취소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채 필요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고 협정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³⁹⁾

(2) 에콰도르의 주장

반면 에콰도르는 협정이 국제법이 적용되는 조약이고 영국 국내법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영국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정 당사국인 에콰도르와 미국이 협정에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를 통해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에 비추어

38) *Ibid.*, para. 30.

39) *Ibid.*, paras. 32-35.

보면 그 중재절차를 감독하는 법원이 사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사라고 하였다.

에콰도르는 협정을 통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중재에 동의하여 상시청약(standing offer)을 하고, 투자자인 Occidental은 중재 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에 중재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중재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협정에 정해진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협정에 의해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런던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중재지인 영국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Occidental이 미국의 협정상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Occidental 스스로 UNCITRAL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중재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이상 뉴욕협약과 중재지인 영국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⁰⁾

(3) 영국 법원의 판단

영국 고등법원은 투자협정이 에콰도르

와 미국 간에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자에게도 투자유치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법상 권리를 부여한다고 분석한 후⁴¹⁾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중재합의 역시 국제공법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고,⁴²⁾ 에콰도르가 취소소송에서 문제삼는 것은 중재합의에 따라 인정되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의 범위이므로 국제공법상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⁴³⁾ 우선, 고등법원은 런던이 중재지인 이상 영국 법원은 중재법에 따라 위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법심사 자제에 관한 영국법규칙 위배인지가 문제된다고 보았다.⁴⁴⁾

고등법원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데, 중재규칙과 중재지의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Occidental과 에콰도르는 중재지법의 구속을 받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투자협정이 해석 및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⁴⁵⁾ 그

40) *Ibid.*, paras. 36-42.

41) *Ibid.*, para. 61.

42) *Ibid.*, para. 63.

43) *Ibid.*, para. 66.

44) *Ibid.*, para. 71-72.

런데 중재법은 중재 당사자에게 중재지가 영국인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영국 법원이 이러한 국내법상 권리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되지 않은) 조약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⁴⁶⁾ 이 사건에서도 에콰도르는 중재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⁴⁷⁾ 이러한 에콰도르의 국내법상 권리에 관하여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Occidental*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⁸⁾ 이후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역시 고등법원의 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⁴⁹⁾

라. 관할권에 관한 영국 법원의 판단

이상과 같이 영국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에콰도르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에콰도르의 주장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중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 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1) 에콰도르의 주장

에콰도르는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세에 관한 문제(*matters of taxation*)이고, 협정 제10조 제2항 (a), (b) 및 (c)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수용, 송금, 투자계약 또는 인가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조세 관련 문제에 대해 협정이 적용되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미환급은 분명히 조세 관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Occidental*은 그 청구의 근거를 협정 제10조 제2항 (c)에 두지 않았고, 이 조항의 해석상 에콰도르 국내법에 의해 투자계약의 준수와 집행이 방해된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 사건과 같은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에콰도르는 부가가치세 미환급과 투자계약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쟁 대상이 투자계약상 조건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

45) *Ibid.*, para. 73.

46) *Ibid.*, paras. 74-76.

47) *Ibid.*, paras. 77-78.

48) *Ibid.*, paras. 86-87.

49) *The Republic of Ecuador v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Appeal [2005] EWCA 1116-9, 9 September 2005, paras. 57-58.

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⁵⁰⁾

(2) Occidental의 주장

Occidental은 협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세 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설사 조세 관련 문제라고 하더라도 협정이 적용되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미환급과 관련하여 에콰도르의 협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의 해석, 준수 및 집행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는 위 예외사유인 투자계약 또는 인가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조세 관련 문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Occidental과 에콰도르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것을 전제로 계약 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미환급이 문제되는 이 사건은 투자계약 조건의 준수와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⁵¹⁾

(3) 고등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우선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

였다. 관할권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심사기준은 그 판단이 타당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다시 처음부터 심리(re-hearing)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합의에 따른 관할권이 존재하는지를 영국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²⁾

다음으로 고등법원은 이 사건 분쟁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에콰도르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사유에 관하여, Occidental과 Petroecuador 사이의 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Occidental이 얻는 유류의 양을 정하는 기준이 정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조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중재판정부로서는 계약의 체결과정과 그 조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⁵³⁾

고등법원은 조약인 투자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에서 정한 조약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본적으로 조약문의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50) *The Republic of Ecuador v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2006] EWHC 345, 2 March 2006, paras. 47-68.

51) *Ibid.*, paras. 69-76.

52) *Ibid.*, para. 7.

53) *Ibid.*, paras. 77-89.

고려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투자협정 제10조 제2항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문제가 관련된 조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정의 규정, 특히 제6조와 제7조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조세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⁵⁴⁾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부가가치세 미환급은 협정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조세 관련 문제임이 분명하므로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협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위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 있다는 것이 고등법원의 결론이고,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⁵⁵⁾ 따라서 관할권을 인정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에콰도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⁵⁶⁾

(4) 항소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투자협정이 국제법에 해당하여 관습국제법에 해당하는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국가 간, 즉 미국과 에콰도르 간 투자의 증진이므로 투자협정의 문언에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에콰도르는 투자협정 제10조 제2항 (c)의 문언이 “투자계약 조건의 준수와 집행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자계약상의 의무의 준수나 집행 그 자체가 문제된 경우에만 해당 예외사유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이고 위 조항의 “관하여”는 투자계약 조건의 준수와 집행에 관련된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⁵⁸⁾ 따라서 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에콰도르의 항소를 기각하였다.⁵⁹⁾

54) *Ibid.*, paras. 90-102.

55) *Ibid.*, paras. 103-109.

56) *Ibid.*, paras. 110, 138.

57) *The Republic of Ecuador v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Appeal [2007] EWCA 656-4, 4 July 2007, paras. 25, 28.

58) *Ibid.*, paras. 29-32.

59) *Ibid.*, para. 39.

2. *EMV v Czech Republic* 사건

가. 중재판정의 요지

룩셈부르크 회사인 European Media Ventures(EMV)는 2005년 8월 체코-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따라 체코를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개시하였다. 적용 중재규칙은 UNCITRAL 중재규칙(1976), 중재지는 영국 런던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EMV는 체코 당국이 방송국 면허의 이전을 승인하지 않아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분쟁절차를 정한 투자협정 제8조 제1항은 국제투자중재의 대상을 “협정 제3조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분쟁(Disputes between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compensation due by virtue of Article 3 Paragraphs (1), and (3)...)”으로 정하고 있었다. 피청구국 체코는 위 제8조의 문언 해석상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amount of compensation)에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관할권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였다. 위 조항이 “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분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는 보상의 범위에 한정됨이 분명하고, 중재판정부는 수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적절성에 관해서만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⁶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주장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모두 반한다면서, 제8조 제1항이 “보상에 관한 분쟁”이라고 하고 있을 뿐 “보상금액”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투자를 촉진함에 있으므로 수용보상금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수용 보상에 관한 권리 등 보상에 관한 다른 문제들도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⁶¹⁾

중재판정부는 우선 협정 제8조 제1항이 “보상에 관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내세우는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⁶²⁾ 그리고 수용 보상에 관한 판단 권한이 보상금액에 한정되는지 그 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인정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중재판정부가 보상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수용

60) *European Media Ventures SA v. The Czech Republic*, Award on Jurisdiction, 15 May 2007, paras. 41-42.

61) *Ibid.*, paras. 43-47.

62) *Ibid.*, paras. 81-87.

의 발생 여부와 경위, 전부 수용인지 일부 수용인지, 수용된 자산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등 다양한 쟁점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수용 보상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용의 발생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투자를 증진하려는 투자협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였다.⁶³⁾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관할 판정에 대해 피청구국 체코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아래 항을 변경하여 살펴보겠지만,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체코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영국 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중재판정부는 본안에서 체코의 행위가 (간접)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⁶⁴⁾

나. 영국 법원의 판단

체코는 중재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국 고등법원에 위 관할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체

코는 협정이 성안된 1989년 당시 협정 당사국들은 투자분쟁절차의 대상을 수용 보상금액의 적절성에 한정하기로 이해하였고, 만약 수용의 적절성, 즉 수용에 관한 책임까지 중재판정부의 판단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면 “수용으로 인한 보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⁵⁾ 특히 체코는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투자의 보호와 증진이라고 하더라도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목적론적 해석보다는 협정당사국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⁶⁾

이에 대해 EMV는 투자협정의 대상은 투자의 증진과 보호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중재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보상에 관한”이라고 하여 보상에 관한 것을 분쟁 대상으로 할 뿐 보상금액의 적절성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수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⁶⁷⁾ 또

63) *Ibid.*, paras. 48-68.

64) *European Media Ventures SA v. The Czech Republic*, Partial Award on Liability, 8 July 2009, paras. 70-91.

65) *The Czech Republic v. European Media Ventures SA*,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2007] EWHC 2851, 5 December 2007, para. 11.

66) *Ibid.*, para. 22.

67) *Ibid.*, para. 12.

한, 공산권 국가들이 체결한 투자협정들에 분쟁절차의 대상을 수용 보상금액에 한정하기 위하여 이를 명시한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 협정에는 그러한 문언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⁶⁸⁾

영국 고등법원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Ecuador v Occidental*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관할권 존부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 원칙에 따라 협정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투자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조약 문언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⁹⁾ 조약 문언을 해석하기 위하여 협상기록 등 부수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수적 자료들조차 그 의미가 모호하다면 조약 문언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⁷⁰⁾ 또한, 국제법이 적용되는 조약은 조약 해석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각국 법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

였다.⁷¹⁾

고등법원은 협정 제8조 제1항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상”에 관한 문제에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보상에 관한”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는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보상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용이 실제 발생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8조 제1항이 보상금액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관한 문제를 폭넓게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투자를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⁷²⁾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해야 하는지, 즉 보상이 필요한 수용이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실질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아 체코의 청구를 기각하였다.⁷³⁾

68) *Ibid.*, para. 26.

69) *Ibid.*, paras. 13-20.

70) *Ibid.*, paras. 31-32.

71) *Ibid.*, para. 34.

72) *Ibid.*, paras. 44-48.

73) *Ibid.*, paras. 53-54.

IV. 싱가포르 사례의 검토

1. 중재판정의 요지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기업인 Sanum Investments는 라오스의 조치로 인하여 자신의 카지노와 오락 사업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에 따라 라오스를 상대로 국제투자중재를 개시하였다. UNCITRAL 중재규칙(2010)이 적용 중재규칙으로, 싱가포르가 중재지로 각각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라오스의 조치가 수용조항, 공정·공평대우조항, 최혜국대우조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국 라오스는 ①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은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설립된 기업인 Sanum에 대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고, ②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수용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한정된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라오스의 관할권 항변을 판단하기 위하여 절차가 분리되었다. 라오스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관할권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였지만, 논문의 목적상 위 두 가지 사유만 살펴보고자 한다.

가. 마카오가 투자협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1) 라오스의 주장

라오스는 중국이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에도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마카오가 자율적으로 국제무역 및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마카오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이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당시 국제연합에 제출한 통보서에는 투자협정이 마카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보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문화적 문제에 대한 마카오의 독자적인 조약 체결권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투자협정은 1993년 발효되었는데 중국이 마카오의 주권을 회복한 1999년 이후에 기존의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엔나협약 제29조⁷⁴⁾ 등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마카오에 설립된 기업인 Sanum에 대해 투자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⁷⁵⁾

74) 비엔나협약 제29조는 조약의 영토적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의사가 조약으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은 각 당사국의 전체 영역에 관하여 각 당사국을 구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2) Sanum의 주장

청구인 Sanum은 우선 마카오가 1999년 중국으로 회복된 후 특별행정구가 되고 일정한 자율권한을 가진 것은 중국 국내 문제일 뿐이고, 마카오가 중국의 주권 내에 있는지 중국이 체결한 조약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국제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moving treaty-frontiers rule)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9조에 따라 중국이 당사국인 투자협정은 마카오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제29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국 국내적으로 마카오가 조약 체결에 관한 일정한 자율권을 가지고, 실제로 마카오가 제3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적 권한 배분의 문제일 뿐 비엔나협약 제29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별도의 의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를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투자협정의 해석상 마카오에도 투자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⁶⁾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우선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영토 전체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약 그 자체에서 그렇게 정하거나 달리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조약은 당사국 영토 전체에 미친다고 보았다.⁷⁷⁾ 이러한 전제하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투자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되면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는지, 마카오에 협정을 적용하면 협정 운용의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지 않기로 달리 확정되었는지 등을 살펴해보았다.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이 투자자의 보호와 경제적 협력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협정을 마카오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도 이러한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⁷⁸⁾ 또한, 협정 당사국인 중국과 라오스가 계획경제 체계를 가진 반면 마카오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한다고 하여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75) *Sanum Investments v.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 PCA Case No. 2013-13, Award on Jurisdiction, 13 December 2013, paras. 51-79.

76) *Ibid.*, paras. 80-110.

77) *Ibid.*, paras. 229-238.

78) *Ibid.*, paras. 239-242.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협정의 운용 조건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다.⁷⁹⁾

그리고 마카오가 독자적인 조약 체결권을 가져 중국과 별도로 다른 국가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중국이 체결한 조약이 마카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이 마카오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⁸⁰⁾

나. 물적 관할권의 존재 여부

(1) 라오스의 주장

라오스는 투자협정 제8조 제3항⁸¹⁾이 국제투자중재의 대상을 수용 보상금액(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공정·공평대우, 수용, 계약 위반에 관한 주장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제8조 제3항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투자협정의 당사국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에

동의하였고 그 외 수용의 발생 여부 등 다른 분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청구국 라오스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분쟁에 대한 중재에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투자협정은 당사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는데, 협정을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하여 (국내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⁸²⁾

(2) Sanum의 주장

청구인 Sanum은 협정 제8조 제3항을 피청구국의 항변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이는 분쟁이 보상금액의 결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할 뿐 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수용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은 수용 보상금액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고, 수반되는 또는 관련되는('involving')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분쟁의 대상을 보상금액에 한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³⁾

79) *Ibid.*, paras. 243-269.

80) *Ibid.*, paras. 278-300.

81) "(3) If a dispute involv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six months a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t may be submitted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to an ad hoc arbitral tribunal. (후략)"

82) *Ibid.*, paras. 144-156.

83) *Ibid.*, paras. 157-169.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 원칙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투자협정 제8조 제3항이 다른 투자협정의 분쟁해결조항에 비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한정되는('limited to') 이라는 표현과 달리 수반되는 또는 관련되는('involving') 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국 라오스의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수용 보상금액의 적절성에만 한정된다고 보면, 사실상 피청구국의 조치를 투자분쟁절차에서 다룰 방법이 없어 위 조항을 둔 취지가 몰각된다고 하였다. 또한, 투자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투자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대상과 목적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실효적 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은 단순히 수용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수용에 대해서도 라오스가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수용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⁸⁴⁾ 이후 중재판정부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 라오스의 행위가 수용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⁸⁵⁾

2. 싱가포르 법원의 판단

가. 고등법원의 판단

(1) Sanum의 사법심사 적격성 항변에 관한 판단

라오스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지 법원인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Sanum은 싱가포르 법원은 라오스의 청구를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통상적인 상사중재와 달리 국제투자중재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투자협정의 해석이 연관되고, 라오스의 청구는 순수하게 국제법에 관한 문제이므로 싱가포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싱가포르는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의 당사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싱가포르 법원이 이 협정을 해석하게 되면 다른 수많은 유사한 협정, 특히 중국이 당사국인 130여개의 투자협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⁸⁶⁾

고등법원은 설사 국제법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포르 법에 따

84) *Ibid.*, paras. 329-342.

85) *Sanum Investments v.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 PCA Case No. 2013-13, Award, 6 August 2019.

86) *Sanum Investments v.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Singapore [2015] SGHC 15, 20 January 2015, paras. 18(a), 21.

른 권리·의무와 연관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라오스는 중재지인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으므로 싱가포르 국내법이 관련되고, 설사 싱가포르가 위 투자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라오스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Sanum*의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 관할권이 있는지를 문제 삼을 뿐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 외국의 주권적·입법적 권리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⁸⁷⁾

(2) 심사기준에 관한 판단

*Sanum*은 설사 싱가포르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심사기준은 중재판정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상사중재와 비교할 때 국제투자중재에서는 국가가 당사자인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므로 국제법 문제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⁸⁾

그러나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설사 중재

판정부의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사기준을 제한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중재법 제10조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⁸⁹⁾

(3) 라오스의 관할권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우선 고등법원은 위 투자협정의 문언만으로는 협정이 마카오에도 적용되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후⁹⁰⁾ 취소소송절차에서 제출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라오스는 취소소송절차에서 라오스 정부와 중국 정부 측 서신 두 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서신의 취지는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이 서신이 협정의 당사국인 라오스와 중국이 그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b)에서 정하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후속 관행”에 해당하고, 협정 체결 당시 당사국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87) *Ibid.*, paras. 24, 30-31.

88) *Ibid.*, paras. 32-34.

89) *Ibid.*, paras. 32, 35.

90) *Ibid.*, para. 63.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¹⁾

또한, 고등법원은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에서 마카오를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편으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라오스 투자협정 체결 당시에는 마카오가 중국 영토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3의 투자협정의 존재는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이 마카오에도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자료가 아니라고 하였다.⁹²⁾ 나아가 고등법원은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사례를 검토한 후 이에 비추어 보면 중국은 투자협정을 자동으로 마카오에 적용하려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⁹³⁾ 고등법원은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후 위 투자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⁹⁴⁾

나아가 고등법원은 중재판정부의 판단 권한이 수용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수용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와 달리 협정 제8조 제3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협정 제8조 제3항의 ‘involving’은 중재판정부 판단과 같이 수용 보상금액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고 광범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수용 보상금액에 관한 문제에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8조 제3항을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투자자가 그러한 분쟁절차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공산국가가 당시 제한된 범위에서 국제투자분쟁절차를 인정하겠다는 정책을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제한적 해석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Sanum의 수용 주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⁹⁵⁾

따라서 고등법원은 투자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가 마카오 기업인 Sanum이 제기한 국제투자중재에 관한 관할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 발생 여부를 판단할 물적 관할권도 가지지

91) *Ibid.*, paras. 70-78.

92) *Ibid.*, paras. 79-88.

93) *Ibid.*, paras. 99-106.

94) *Ibid.*, paras. 110-111.

95) *Ibid.*, paras. 121-128.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법원의 판단

(1) 사법심사 적격성

항소법원은 설사 국가 간 체결된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중재지로 싱가포르를 지정한 이상 당연히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법원은 국제중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설사 국제법의 해석이 문제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라오스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⁹⁶⁾

(2) 심사기준

Sanum은 항소심에서는 싱가포르 법원이 새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국제법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⁹⁷⁾ 그러나 항소법원은 싱가포르 법원은 해당 분쟁을 재판

단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고려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설사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의 판단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그 판단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단지 국제법 전문가로 중재판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⁹⁸⁾

(3) 투자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되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우선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비엔나협약 제29조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국가의 조약은 원칙적으로 모든 영토에 미치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중국이 마카오의 주권을 회복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⁹⁹⁾ 다만, 그에 대한 예외로 ①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는 것이 해당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면 협정의 운용 조건이 과도하게 변동되는 경우, ③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협정에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중 ①과 ②는 적용되지 않음

96) *Sanum Investments v.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of Singapore [2016] SGCA 57, 29 September 2016, paras. 38-39.

97) *Ibid.*, para. 40.

98) *Ibid.*, paras. 41-44.

99) *Ibid.*, paras. 47-49.

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투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 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한다고 하여 이러한 대상과 목적에 위배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한다고 하여 협정의 운용 조건이 과도하게 변동되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으므로 ②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투자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위 ③의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협정에 나타나는지 또는 달리 확정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¹⁰⁰⁾

이에 항소법원은 우선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협정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항소법원은 협정이 마카오에 적용되는지가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① 중국-라오스 투자협정 체결 전에 이루어진 중국과 포르투갈 간의 합의에 따르면 중국이 1999년부터 마카오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협정에 마카오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점,

② 마카오의 주권이 중국으로 회복된 후 투자협정을 개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국제법규칙에 따라 중국의 영토에 속하는 마카오에 투자협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¹⁰¹⁾

다음으로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본 후 투자협정을 마카오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달리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¹⁰²⁾ 고등법원이 취소소송절차에서 제출된 라오스와 중국 정부 간의 서신이 협정당사국의 후속 해석이라고 보아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라오스가 중재판정 이후 스스로 만들어 낸 서신들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결정적 기일 이론(critical doctrine theory)에 따라 서신들의 증명력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국과 마카오의 서신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투자협정의 내용이 변경될 수 없고, 특히 중재가 개시되고 판정이 있고 난 이후 비로소 주고 받은 서신으로 인하여 제3자인 Sanum의 권리가 소급하여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¹⁰³⁾

100) *Ibid.*, paras. 50-53.

101) *Ibid.*, paras. 55-60.

102) *Ibid.*, paras. 61-122.

103) *Ibid.*, paras. 103-116.

(4)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수용에 미치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투자협정 제8조 제3항에서 사용되는 ‘involving’이라는 문언은 (Sanum의 주장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라오스의 주장과 같이) 그 문언 뒤에 나오는 요소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애매하면 조항의 맥락,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⁴⁾

그런데 항소법원은 만약 청구인이 수용 발생 여부에 관한 분쟁을 국내법원 등에서 다루고 수용 보상금액에 대해서만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청구인이 수용을 다투는 국내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택일조항(갈림길조항; fork-in-the-road clause)에 의해 수용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국내법원 또는 국제투자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후에는 다른 분쟁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택일조항이 중국-라오스 투자협정에 있는데, 이로 인하여 Sanum이 수용에 관한 소를 국내법원에 제기하면 수용 보상금액에

대한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국제투자중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하였다.¹⁰⁵⁾ 또한, 제8조 제3항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¹⁰⁶⁾

따라서 항소법원은 투자협정에 따른 관할권이 수용 보상금액에 미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단은 잘못이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은 수용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수용의 발생 여부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V. 평가와 시사점

1. 취소사유로서의 관할권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SID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사유와 절차는 중재지의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영국, 싱가포르, 한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취소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절차적 문제이다.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절차적 잘못이 있는 경우

104) *Ibid.*, para. 126.

105) *Ibid.*, para. 133.

106) *Ibid.*, para. 150.

이다.¹⁰⁷⁾ 둘째, 관할권 문제이다. 유효한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 내의 분쟁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¹⁰⁸⁾ 셋째, 공공질서 문제이다. 분쟁이 국내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거나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이다.¹⁰⁹⁾

그런데 앞서 살펴본 세 건의 사례는 모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문제 되었다. 실제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절차에서는 상사중재에 비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¹¹⁰⁾ 우리나라가 취소신청 당사자였던 Dayyani 사건 역시 영국 고등법원에서 한국-이란 투자협정상 투자 해당 여부, 우리나라 영토에서의 투자 해당 여부 등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다툼이 이루어졌다.¹¹¹⁾ 그 외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국제투자중재가 다투어진 많은 사안에서도 관할권이 문제되었다.¹¹²⁾ ICSID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의 취소절차에서도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 여부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고 있다.¹¹³⁾

이처럼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절차에서는 다른 취소사유(절차 위반, 공공질서 위배 등)에 비하여 관할권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투자중재의 당사자인 국가와 기업 등의 행위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절차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107) 영국 중재법 제68조 제2항 (a)-(f), (h)-(i),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 및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 (a) (ii) 및 (iv),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라목.

108) 영국 중재법 제67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 및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 (a) (i) 및 (iii),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109) 영국 중재법 제68조 제2항 (g),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 및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 (b), 한국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110) Kaj Hobér and Nils Eliasson, “Review of Non-ICSID Awards by National Courts,” in *Arbitr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econd Edition, edited by Katia Yannaca-Small, 759-7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791.

111) *Republic of Korea v Dayyani and others*,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2019] EWHC 3580.

112) 일부 사례를 들면, *Russia Federation v. Sedelmayer*, Decision of the Stockholm District Court, Case No. T6-583-98, 1 July 2011 (스웨덴 법원); *Kaliningrad Region v. Lithuania*, Judgment of the Paris Court of Appeal, 18 November 2010 (프랑스 법원); *EDF International S.A. v. Republic of Hungary*, Swiss Federal Supreme Court Decision, 6 October 2015 (스위스 법원); *The United Mexican States v. Cargill, Incorporated*, Decision of Court of Appeal for Ontario, 4 October 2011 (캐나다 법원) 등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문제가 되었다.

113) Yannaca-Small, “Annulment of ICSID Awards,” 736.

적법절차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지 않으며, 공공질서 위배 여부 판단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 위반 또는 공공질서 위배가 취소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게다가 상사중재에 비하여 국제투자중재에서는 관할권의 존재 여부가 거의 항상 치열하게 다투어지므로 다른 취소사유에 비해 다툼이 될 소지가 클 것이다.

2022년 8월 현재 2,566개의 국가 간 투자협정이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¹¹⁴⁾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특성상 그 내용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 해석의 일관성을 도모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상사중재에 비하여 국제투자중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존재한다. 절차 위반이나 공공질서 위배 문제를 제외하고 관할권 문제만으로도 여러 권의 연구서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쟁점이 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협정에 따른 국제투자중재에서 중재합의의 형태가 관할권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본다. 투자협정에 따른 국제투자중재에서의 중재합의는 분쟁당사자가 동시에 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협정의

일방당사국인 투자유치국(피청구국)은 투자협정에서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청약의 의사를 일반적·사전적으로 표시한다. 그 후 투자자(청구인)는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면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로써 중재합의가 있게 된다. 이처럼 피청구국은 투자협정에 사전적·일반적으로 동의를 의사를 표시하고 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 되므로 피청구국의 사전적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투자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피청구국의 동의의 형태 역시 일관되지 않고, 폭넓게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 국제투자중재를 인정하는 경우, 투자와 관련되고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분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정한 쟁점(예컨대, 수용)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또한, 투자협정에서는 물적 관할로서 보호대상투자 여부, 인적 관할로서 투자자 여부 등에 대한 조항 뿐만 아니라 국제투자중재 제기 전 따라야 할 여러 절차적 요건(냉각기간, 국내구제절차, 태일조항, 포기조항 등)을 정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계약상 청구, 청구적격, 제척기간 등 관할권에 관한 여타 쟁점들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투자협정의 해석과 법리적 문제 뿐만

114) <https://investmentpolicy.unctad.org/international-investment-agreements> (2022년 8월 9일 확인).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처럼 취소사유로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에서 표시된 피청구국의 동의 범위, 즉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의 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협정의 문언만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다양한 중재판정과 각국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제법 해석 원칙에 대한 이해

이처럼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은 투자협정에 나타나는 피청구국의 동의가 무엇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청구국의 동의의 내용과 범위는 결국 투자협정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협정은 국가 간 체

결된 조약이다.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는 조약 해석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약 해석에 관한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본다.¹¹⁵⁾ 따라서 투자협정의 당사국이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서 정한 조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협정을 해석한다.¹¹⁶⁾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¹¹⁷⁾고 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중시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조약 해석에 있어 문맥은 조약문, 전문, 부속서 뿐만 아니라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 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작성한 문서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국 간의 추후 합

115)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제8판 (박영사, 2018년), 347면; Christian Djefal, *Static and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A Functional Reconstr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3-4. 여러 국제법원도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다. *Arbitral Award of 31 July 1989 (Guinea-Bissau v. Senegal)*, Judgment, I.C.J. Reports 1991, p. 70, para. 48;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WT /DS2/AB/R,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17;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AB/R, WT/DS10/AB/R, WT/DS11/AB/R, Reports of the Appellate Body, 10; *Enron Corporation and Ponderosa Assets, L.P.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1/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47.

116) 예컨대, *Agua* 사건에서 문제 된 투자협정의 일방당사국이자 피청구국인 볼리비아는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중재판정부는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조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Agua del Tunari, S.A. v. Republic of Bolivia*, ICSID Case No. ARB/02/3, Decision on Respondent's Objections to Jurisdiction, para. 88.

1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 게시된 비엔나협약 국문본의 번역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의, 추후의 관행, 관련된 국제법 규칙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조는 조약 체결 당시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을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법원이 향후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을 처리하게 된다면, 투자협정 당사국이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 원칙을 검토해야 한다. 투자협정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의 영역에 있으므로 국제법상 조약 해석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투자협정의 해석에 있어 협정상 서문(preamble)이 가진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문에서 투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투자유치국의 경제 발전과 정책권한 보호를 포함하는지 등에 따라 조약 문언의 의미와 사안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투자협정상 분쟁의 대상이 수용 보상금액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수용의 발생 여부에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 EMV 사건과 Sanum 사건에서 각각 영국 법원과 싱가포르 법원이 서문에서 투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할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이 조약 해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조약 문언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 해석의 원칙만으로는 조약 해석의 실무를 모두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한다.¹¹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라오스-중국 투자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라오스와 중국 간에 주고 받은 서신이 투자협정의 해석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싱가포르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견해가 다르기도 하였다. 이 서신이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후속 합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반대의 결론을 낸 것이다. 물론 국내법 해석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협정 문언이나 관습국제법이 국내법에 비하여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그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다행스러운 점은 국제투자중재 사건 수가 증가하고 이에 관한 판단이 쌓여가면서 특정한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해소되고, 중재판정부가 종전에 판단이 이루어진 쟁점에 관한 선례를 참고하여 일관된 법리가 채택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¹¹⁹⁾ 특정한 쟁점에 대해 반복되어

118) J Romesh Weeramanty, *Treaty Interpreta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157; Hai Yen Trinh, *The Interpretation of Investment Treaties* (Leiden: Martinus Nijhoff, 2014), 4 참조.

119) Rudolf Dolzer &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econd Edition (Oxford: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는 협정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²⁰⁾ 그러므로 우리 법원이 조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선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3. 사법심사 적격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ccidental* 사건과 *Sanum* 사건에서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피고는 국내법원이 투자협정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법심사 적격성(justiciabil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을 해석해야 하는데, 영국(*Occidental* 사건) 또는 싱가포르(*Sanum* 사건)는 관련 투자협정(에콰도르-미국, 라오수-중국)의 당사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제투자중재의 피청구국(투자유치국)은 취소소송의 당사자이지만 또 다른 투자협정의 당사국은 취소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데, 국내법원이 투자협정을 해석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국제법상 권리·의무를 정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향후 국제투자중재의 취소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투자중재에서는 중립성을 위하여 협정의 당사국 일방을 중재지로 하지 않고 제3국을 중재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다른 국가 간 체결된 투자협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이 다루게 된다면, 앞서 살펴본 영국과 싱가포르 사건의 취소소송의 피고가 주장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닌 투자협정을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협정의 타방당사국이 참여하지 않은 절차에서 그 국가의 투자협정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투자협정에 따른 중재판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국제투자중재의 당사자가 아닌 투자협정의 타방당사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국가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는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3; Gabrielle Kaufmann-Kohler, "Arbitral Precedent: Dream, Necessity or Excuse?" *Arbitration International* 23, no. 3 (2007): 373. 다음 판정도 참조. *Saipem Spa v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CSID Case No ARB /05/07, Decision on Jurisdiction and Recommendation on Provisional Measures, 21 March 2007, para. 67;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Partial Award*, 13 November 2000, para. 280.

120) James Crawford,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35; Charles de Visscher, *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trans. by P. E. Corbet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353.

것은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법원과 싱가포르 법원은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중재의 판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저자 역시 그 결론에 동의한다.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논의되는 사법심사 적격성 개념을 우리 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사법자제라는 개념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은 비록 형사사건이기는 하나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평가 등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¹²¹⁾ 또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대법원¹²²⁾과 헌법재판소¹²³⁾ 역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여 경우에 따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사법심사 적격성이나 사법자제, 통치행위 등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중재지인 국제투자중재의 판정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

당하다. 그 이유는 국제투자중재의 성격, 협정 당사국의 의사, 분쟁 당사자의 의사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국제투자중재의 성격이다. 국가의 중요한 안보·외교적 이익 등이 자주 문제되는 국가 간 분쟁과 달리 투자자-국가 간의 투자분쟁은 투자자의 투자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투자유치국(피청구국)의 국제법상 의무 또는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국내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된 내용이 외국인인 투자자에 대한 의무 위반 여부를 주로 따지고, 그 결과 역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이익이 연관되거나 소위 고도의 정치행위 영역¹²⁴⁾에 해당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에 대해 “사법권의 정치화·행정화를 막고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¹²⁵⁾ 국제투자중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정치화·행정화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2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12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자제는 지극히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23) 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 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7헌마369 결정.

124)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 참조.

125) 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6헌바80 결정.

둘째, 투자협정 당사국의 의사이다. 투자협정의 양 당사국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면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만약 중재지 법원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였다면 당사국은 충분히 협정에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지 않고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만 두거나,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인정하더라도 국내법원에 의한 해결절차만 두거나 (국내법원의 관여가 덜한¹²⁶⁾ ICSID 협약에 의한 해결절차만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UNCITRAL 중재규칙 등 통상적인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분쟁해결절차를 투자협정에 둘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협정에 정할 수 있다.¹²⁷⁾ 따라서 투자협정에서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따른 국제투자중재를 인정하면서도 불복 가능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 협정 당사국

의 의사는 판정에 대한 중재지 법원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셋째, 국제투자중재 당사자의 의사이다. 국제투자중재의 피청구국은 투자협정 당사국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정에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따른 분쟁해결을 인정한 것은 중재지의 국내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피청구국의 의사가 내포된 투자협정에 따른 국제투자중재에 동의한 투자자(청구인)는 협정 당사국이 협정에서 정한 바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같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에도 UNCITRAL 중재규칙을 선택하여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면 그 당연한 귀결로 중재지 법원의 관여를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한다.

126)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구체적인 재산 등을 대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ICSID 협약 제54조 제3항) 국내법원의 관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권면제의 적용 여부도 집행지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ICSID 협약 제55조). 그러나 이는 국내법원이 해당 판정 그 자체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소소송 등을 통해 판정 자체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따른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127) 물론 중재지 법원이 이런 합의를 유효하다고 볼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재판정의 취소는 통상 중재지 법의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취소신청 등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투자협정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중재지 법원을 구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고, 중재지법의 해석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심사기준

앞서 살펴본 세 사례 모두 심사기준이 문제 되었다. 국제법의 영역에 있는 투자 협정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법원이 새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에서 심사기준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현재 투자분쟁절차에서는 항소나 재심이 인정되지 않는데, 심사기준에 따라서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유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항소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²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법원과 싱가포르 법원 모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해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법원이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4년 *BG Group* 사건¹²⁹⁾에서 7인의 다수의견으로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유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³⁰⁾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 법원은 *Bayview*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심지어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 내에서 판단하였다는 강한 추정(*powerful presumption*)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¹³¹⁾ 그러나 캐나다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이후 *Cargill*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판단과 관련된

128) Anthea Roberts & Christina Trahanas, "Judicial Review of Investment Treaty Awards: BG Group v. Argentin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8, no. 4 (October 2014): 750-751.

129) 영국 국적의 투자자(청구인)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중재 사건이다. 중재지는 미국 워싱턴 디시였다. 중재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관할권 또는 청구적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르헨티나의 협정 위반을 인정하였다. *BG Group Plc. v. The Republic of Argentina*, UNCITRAL Rules, Final Award, 24 December 2007.

130) 이에 비해 2인의 소수의견은 국가 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국제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 Judgment,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ocket No. 12-138, 5 March 2014. 이 취소소송의 1심인 미국 디시 연방지방법원은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과 같이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여 중재판정을 유지한(아르헨티나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소수의견과 같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중재판정을 취소(아르헨티나 청구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Roberts & Trahanas, "Judicial Review of Investment Treaty Awards," 751-753 참조.

131) *Bayview Irrigation District #11 and others v. The United Mexican States*, Reasons for Judgment,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Court File No. 07-CV-340139-PD2, 5 May 2008, para. 63. "While the decisions of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are not immune from challenge, any challenge advanced is confronted with the 'powerful presumption' that the tribunal acted within its authority. An arbitral decision is not invalid be-

여 강한 추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³²⁾

각국 법원이 채택한 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단에서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표면적으로 채택한 심사기준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심사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텐데, 우리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

못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증명이 있다면 중재판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¹³³⁾ 이렇게 보는 것이 중재지 법원의 감독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¹³⁴⁾ 비록 상사중재에 대한 것이나 중재법상 취소사유의 존재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심사기준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재판정부 판단의 정확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소사유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을 실시한 후 사실관계를 이에 대입하여 판단할 뿐 따로 중재판정부 판단을 존중함을 알 수 있는 표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¹³⁵⁾ 다만 이 경우에

cause it wrongly decided a point of fact or law. The grounds ... must therefore be construed narrowly and the Applicants must satisfy a high threshold to succeed in having the Award set aside.”

132) *The United Mexican States v. Cargill, Incorporated*, Decision of Court of Appeal for Ontario, 4 October 2011, para. 46. “[T]he principle underlying the concept of a “powerful presumption” is that courts will intervene rarely because their intervention is limited to true jurisdictional errors. To the extent that the phrase “powerful presumption” may suggest that a reviewing court should presume that the tribunal was correct in determining the scope of its jurisdiction, the phrase is misleading. If courts were to defer to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n issues of true jurisdiction, that would effectively nullify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review authority of the court ...”

133) 김민경, 앞의 학위논문, 76면은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법원이 다시 심사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134) Roberts & Trahanas, “Judicial Review of Investment Treaty Awards,” 763은 중재지 법원이 중재판정, 특히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판단에 대해 의미 있는 재검토를 한다면 중재판정부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3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0387 판결 등.

도 법원이 중재판정의 본안을 다시 심사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 관할권과 본안이 특히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겹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본안과 분리하여 관할권만 다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¹³⁶⁾

VI. 마치며

우리나라가 피청구국이거나 우리나라 투자자가 제3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중재에서도 한국이 중재지로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립성의 우려로 인하여 상대방인 투자자(우리나라가 피청구국인 경우) 또는 피청구국(우리나라 투자자가 청구인인 경우)이 동의하지 않아 제3의 중립국을 중재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고, 전 세계의 중재실무자나 분쟁 당사자가 우리나라가 중립적인 중재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향후 제3국과 그 나라에 투자한 투자자 간의 국제투자중재의 중재지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 투자자와 아시아 국가 간 발생한 국제투자중재에 있어서는 위

치적 근접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한국이 유력한 중재지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아직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을 진행한 경험은 없지만, 장래에는 이를 다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에서는 일반적인 상사중재에서 문제되지 않는 쟁점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미 취소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에는 이러한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함에 있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여, 국제투자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취소사유로서의 관할권 문제, 투자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국제법상 해석 원칙의 적용, 사법심사 적격성, 심사기준 등과 관련한 쟁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에서는 중재지의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 문제되므로 향후 우리 법원이 이런 사건을 다루게 된다면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6) 이 점을 지적하는 견해는 Hobér and Eliasson, "Review of Non-ICSID Awards by National Courts," 792.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김갑유 대표집필,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년.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개정판, 박영사, 2018년.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제8판, 박영사, 2018년.

[국내 논문]

김민경,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 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4년.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16권 제1호, 2007년.

김영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개선방안,”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2012년.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2호, 2012년.

정선주,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대상,”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 2022년.

[해외 단행본]

Crawford, James.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9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Darwazeh, Nadia. “Article V(1)(e),”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edited by Herbert Kronke, Patricia Nacimiento, Dirk Otto & Nicola Christine Port. 301-344.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 Djeffal, Christian. *Static and Evolutive Treaty Interpretation: A Functional Reconstr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Dolzer, Rudolf.; Schreuer, Christop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Ferrari Franco.; Rosenfeld, Friedric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Comparative Introducti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21.
- Lim, C. L.; Ho, Jean; Paparinskis, Martin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Radi, Yannick. *Rul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 Trinh, Hai Yen. *The Interpretation of Investment Treaties*. Leiden: Martinus Nijhoff, 2014.
- De Visscher, Charles. *Theory and Reality in Public International Law*, trans. by P. E. Corbet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Weeramanty, J Romesh. *Treaty Interpreta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해외 논문/챕터]

- Heiskanen, Veijo.; Halonen, Laura. “Post-Award Remedies,” in *Litiga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 Practitioner’s Guide*, edited by Chiara Giorgetti. 497-526. Leiden: Koninklijke Brill, 2014.
- Hobér, Kaj.; Eliasson, Nils. “Review of Non-ICSID Awards by National Courts,” in *Arbitr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econd Edition, edited by Katia Yannaca-Small. 759-7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Kaufmann-Kohler, Garbrielle. “Arbitral Precedent: Dream, Necessity or Excuse?” *Arbitration International* 23, no. 3, 2007.

- Marchili, Silvia M. & McBrearty, Sara. "Annulment of ICSID Awards: Recent Treads," in *ICSID Convention after 50 Years: Unsettled Issues*, edited by Crina Baltag. 427-451.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7.
- Roberts, Anthea.; Trahanas, Christina. "Judicial Review of Investment Treaty Awards: BG Group v. Argentin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8, no. 4, October 2014.
- Shin, Hi-Taek. "Annulment," in *Build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The First 50 Years of ICSID*, edited by Meg Kinnear, Geraldin R. Fischer, Jara Minguez Almeida, Luisa Fernanda Torres & Mairee Uran Bidegain. 699-714.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6.
- Tay, Yu-Jin. "Singapore," in *Enforcement of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wards*, edited by H Julien Fourret. 387-402. London: Globe Business Publishing Ltd, 2015.
- Yannaca-Small, Katia. "Annulment of ICSID Awards: Is it Enough or Is Appeal around the Corner?," in *Arbitration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econd Edition, edited by Katia Yannaca-Small. 727-75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국문초록]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
-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한 창 완

우리나라 법원은 지금까지 (ICSID 협약에 따르지 않은)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을 처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장래 우리나라가 중립적인 중재지로서 인식될 수 있다면 제3국과 그 나라에 투자한 투자자 간의 국제투자중재 사건의 중재지로 고려되고,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에서는 상사중재와는 다른 쟁점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일부 사례를 검토하여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에서 어떤 쟁점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몇 가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취소사유의 존재, 내용 및 범위 등은 중재지법의 해석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취소소송에서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①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소송에서는 중재판정부 관할권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고, ② 관할권의 존재 즉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약 해석의 원칙을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③ 국제투자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는 국가 간 체결한 투자협정에 대한 국제법상 해석이 문제되므로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사법심사 적격성 내지 사법자제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④ 관할권에 관한 중재판정부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이러한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제투자중재, 취소소송, 영국, 싱가포르, 관할권, 조약 해석 원칙, 사법심사 적격성, 심사기준

[Abstract]

Setting Aside of Non-ICSID Investment Arbitral Awards - Focusing on English and Singapore Cases -

Changwan Han

A Korean court has never dealt with a set aside proceeding of a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l award. However, provided that Korea, e.g., Seoul, can be perceived as a neutral place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it is not entirely outside of the realm of possibility that Korea may be considered as a place of arbitr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between a third country and an investor who has invested in that country, and that the set aside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l awards may be filed in a Korean court. In the set aside proceedings of investment arbitral awards, issues distinguished from those of commercial arbitration are addressed in various ways. In light of thi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with experiences in dealing with the set aside proceedings so that the relevant issues can be ascertained. This research attempts to examine a few cases in the U.K. and Singapore in order to identify which issues may be addressed in the set aside proceedings, and to review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Certainly, the existence of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the specifics and scope of such grounds, etc., are matters for interpretation of domestic laws in each country of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for the foregoing reason, they are not consistent. Nevertheless, the distinct issues that exist in the set aside proceedings can be identified by reviewing some of the existing set aside cases. As can be confirmed in the cases of the U.K. and Singapore, (i) whether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exists is the most common issue in the set aside proceedings of investment arbitral awards, and (ii) the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in international law shall be understood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jurisdiction, i.e., whether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Furthermore, (iii) issues regarding justiciability or judicial restraint can be heavily debated in the set aside proceedings as an investment treaty is an agreement between and/or among states and shall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iv)

there may be divergent views over the standard of review as some, on the one hand, would argue that the courts of the place of arbitration should respect the rulings of arbitral tribunals and others, on the other hand, will argue for a reexamination of such rulings. As can be seen above, by analyzing the set aside cases of other countries, we may be able to gain an insight into how these issues can be addressed in a prospective set aside case in Korea.

Key-word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set aside proceedings, United Kingdom, Singapore,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treaty interpretation, justiciability, standard of review

제12차 각료회의를 통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WTO, 남은 과제는?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안 홍 상

I. 머리말 : 현장 스케치

현장에서 지켜본 WTO 제12차 각료회의(12th Ministerial Conference, 6.12~17, 제네바)는 순식간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각본없는 드라마였다. 회의 4일차이자 당초 폐회가 예정된 6.15(수)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예상한대로 유의미한 성과가 거의 없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표현이 적중한 듯 했다. 그간 관행처럼 되풀이되었던 차기 각료회의시까지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관세 부과 유예) 연장도 인도·남아공 등의 반대로 불발되는 것처럼 보였고, 20여년간 끌고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WTO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도 요원한 것으로 여겨졌다. 모두 빈손으로 귀국을 준비할 무렵 각료회의를 하루 더 연장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대부분의 협상단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채 협상장으로 모였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협상 과정이 다소 불투명하고 소수 회원국 중심의 ‘그린 룸(Green Room)’ 회의가 계속되어 정확히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각료회의가 끝난 이후 첫 대사급 회의(7.7)에서 다수의 국가가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 최종 합의문서와 결과에 대한 회원국간 소통 미흡, 주요 의제에 대한 소수 국가 위주의 협상 등 절차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할 정도였다. 응고지 WTO 사무총장(Ngozi Okonjo-Iweala, 나이지리아)과 일반이사회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문제는 동 절차가 되풀이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차치하고, 공식 협상의 마지막 날(6.16(목))과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변화는 극적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목요일 오후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이 인도·남아공과 선진국 간 타협으로 합의될 당시까지만 해도 모두 원래 예상하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등 추가 성과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던 수준이었다. 하지만 예고된 기한을 넘어서 6.17(금) 새벽 1시경 △MC-12 결과를 종합한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 △식량안보에 대한 긴급 대응,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자 추가 성과에 대한 기대로 회의장 분위기가 고양되었으며, 새벽 3시경 △과잉어획/과잉능력 등 주요 요소가 빠지긴 하였으나 모두가 고대하던 수산보조금 협상과 함께 △백신에 대한 TRIPS(지재권 협정) 면제(waiver), △위생 및 검역협정(SPS) 조치 등에 대한 성과가 발표되자 회의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당일 새벽 5시에 폐막식을 마치고 나오는 각국 대표단의 모습은 비록 밤샘 회의를 통해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으나, 2013년 무역원활화 협정 타결 이후 약 10년만에 타결된 다자협상이자 20여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WTO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적실성을 보여준 △코로나19 및 미래 팬데믹 대응과 △식량

안보에 대한 긴급 대응 등의 타결로 인해 위기에 빠진 WTO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II. MC-12 성과의 의의 및 평가

MC-12 성과는 총 10개 문서로, 전체를 아우르는 결과 문서와 함께 △수산 1건, △농업 관련 3건, △코로나19 대응 2건, △기타(①전자적 전송물, ②소규모 경제, ③TRIPS 非위반 제소) 3건 등으로 이루어진 소위 “제네바 패키지(Geneva Package)”가 도출되었다. 지난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MC-11)에서는 관행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사항¹⁾들 이외에 다자간 도출된 유의미한 문서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 단연코 최고의 성과는 20여 년만에 합의된 수산보조금 협상으로서, 이는 통상과 환경·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연계된 분야로서 최초일 뿐만 아니라 10년만에 타결된 다자협상으로서 WTO가 여전히 국제적인 통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및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1) 그간 관행적으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 △TRIPS 非위반 제소, △소규모 경제 등 3개 각료 결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WTO가 통상과 연계된 보건 분야 등에서 위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거진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2건의 문서에 합의하여 WTO의 적실성과 시의적절한 대처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다자규범 창설 등 입법 기능에 대한 실패와 불신, △2019년 12월 이후 상소기구 기능 마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WTO의 대내·외 위기를 맞아 WTO 3대 기능에 대한 개혁을 차기 각료회의²⁾까지(분쟁해결 기능은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결과 문서 채택으로 WTO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과 문서에는 새롭게 부상하는 의제인 여성·환경·중소중견기업(MSMEs)³⁾에 대한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동 분야에 대한 논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각 위원회 또는 회의체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시행되거나 러시아 참여를 이유로 회원국들이 협상 참여를 거부(boycott)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불구하고 다자간 합

의할 수 있는 성과가 다수 도출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WTO 사무국측에서 협상 거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막식 직후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도전(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세션을 두어 정치적인 규탄을 위한 별도 시간을 할애했 것이 이후의 정치적 이슈와 협상의 실질적 내용이 연계되는 것을 막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다자통상 무대에서 회원국의 역할이 다소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논의를 주도하고 여타 회원국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다소 잠잠해졌으며, 오히려 항상 발목을 잡는 역할을 수행했던 인도 통상장관(Piyush Goyal)이 각료회의를 끝까지 참석하며 수산보조금, TRIPS,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등 주요 주제마다 전격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여 합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자협상 타결의 한계로 점차 복수국간 협상(JSIs; Joint Statement Initiatives)이나 WTO 밖에서 협상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다자협상에 주력한 인도 입장에서 다소 불리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2) 차기 각료회의인 MC-13은 잠정적으로 2023년 12월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3) MSMEs :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II. 분야별 주요 결과

개별 각료선언/각료결정에 대한 분석보다는 앞서 언급한 주요 분야별로 묶어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결과 문서

MC-12 결과 문서는 전체 논의 사항을 아우르는 문서로서 △각료회의 개최 배경과 목적, △개도국 특혜(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WTO 개혁, △LDC(최빈개도국) 특혜와 이의 연장, △가입, △무역원활화, △서비스,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여성·환경·중소중견기업(MSMEs) 등 신규 의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각료회의시 채택된 각료 선언/결정 등을 첨부하였다.

작년 11월 오미크론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MC-12 연기 직전에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이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며, 마지막까지 협상에 난항을 겪은 부분은 WTO 개혁과 신규 의제에 대한 부분이었다.

WTO 개혁에서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부분은 개혁 관련 논의를 수행할 주체 및 회의체로서, 선진국 진영은 크게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로운 구성과

인력으로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 반면, 개도국들은 모든 회원국의 참여하에 일반이사회 및 산하기구를 주도로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수차례의 대사급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결과 문서의 각주⁴⁾와 같이 일반이사회 및 산하기구에 제안을 하거나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일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신규 의제의 경우, 여성·환경·중소중견기업(MSMEs) 모두 복수국간 협상(JSIs; Joint Statement Initiatives)의 형태로 진행되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인도·남아공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당초 결과 문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각료회의 직전 수차례의 실무회의 끝에 WTO에서의 실제 논의 내용보다는 여러 다자기구에서의 논의 및 보편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 본문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본래 각료회의의 개최 배경 및 목적이 약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코로나 19 영향 등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이슈를 포함하기에는 회원국 간 논란이 예상되어 한 개 문단으로 작성

4) For greater certainty, in this context, this does not prevent groupings of WTO Members from meeting to discuss relevant matters or making submissions for consideration by the General Council or its subsidiary bodies.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각료회의 직전까지도 지난 11월 이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여 대다수의 기대 수준이 낮았던 분야이다. 당초 예상했던 범위보다 상당히 축소된 내용이지만 21년 만에 타결되고, 거의 10년만에 최초로 합의된 다자협상으로서 WTO의 입법 기능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WTO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타결한 최초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각료회의 전/후에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분야로서, 과잉어획/과잉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유류보조금 포함) 지급 금지 및 원양어업에 제공되는 보조금 금지 등 주요 조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합의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형식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타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제되지 않는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지급 금지 의무로부터 개도국에 대한 2년간의 유예기간 적용, △어

획량·어족자원 상태 등에 대한 통보 등 투명성 관련 조항 등이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과잉어획/과잉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도국 특혜 여부를 둘러싸고 △중국을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와 △인도가 제시한 3가지 조건(개도국 유예기간, 개도국 면제 최소 허용기준, 영세어업 허용 구간)에 대한 합의 도출이 불발되어 결국 협정문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다만,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이후 4년 이내에 과잉어획 관련 보조금 및 개도국 특혜 등 잔여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실패시 협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종의 일몰조항(sunset clause)이 도입되어 추가 협상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류보조금 등 일부 민감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당분간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제를 협정 발효 이후로 미루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앞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 농업

농업은 당초 △무역왜곡을 유발하는 국내보조 감축,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PSH),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수출경쟁·수출제한 등의 투명성 등과 같은 의제에 대해 선진-개도국간 대립이 지속되

었다. 이러한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 세계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닥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WTO 사무총장은 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5월경 농업에 대한 작업계획 및 식량안보 각료선언을 제시하였다.

농산물 교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계획은 7대 주제별⁵⁾로 협상원칙을 정하는 수준이었으나 회원국간 이견 조율에 끝내 실패하였다. 각료회의에서는 △식량안보에 대한 긴급 대응, △WFP의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 △위생 및 검역협정(SPS) 선언 등이 합의된 바, 우선 식량안보 각료선언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준수할 행동 지침의 성격으로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12월 일반이사회에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도 및 탄자니아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WFP의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에 대한 각료결정이 재차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되어 끝내 합의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SPS 협정 25주년 계기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규범적 성격이 아닌 선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SPS 각료선언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점차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한 끝에 MC-12 성과로 확인되었다.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롯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대응, WFP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자제에 합의한 것은 WTO가 전통적인 통상 이슈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4.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백신 TRIPS 면제(waiver)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은 전 세계가 겪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해 WTO의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응고지 WTO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야로서, 크게 2개 주제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WTO 차원의 역할을 기술한 각료선언으로, 코로나19 백신·진단·치료제 및 기타 필수 의약품의 수출제한을 자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원활화 등 WTO 내 정책 수단을 활용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5) ①국내보조, ②시장접근, ③수출경쟁, ④수출제한, ⑤면화, ⑥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PSH), ⑦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SM).

작년 6월 선언문 마련을 목적으로 Walker 대사(뉴질랜드)가 조정자가 임명되었다가, 제네바 주재 대사로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Castillo 대사(온두라스)가 후임으로 임명되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완화된 문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 끝에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는 인도·남아공을 필두로 다수의 개도국들이 제기한 백신에 대한 TRIP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면제(waiver)이다. 이는 개도국들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를 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인 바, 선진국들은 그간 기업의 백신 개발 인센티브 부족으로 정부-업계간 협력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여 이러한 waiver를 지지하였고, 다수의 회원국이 나서기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미국, EU, 인도, 남아공 등 4개국(Quad)이 회원국을 대표하여 문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4자간 합의한 문안에 대해 영국·스위스 등은 제약업계 등 백신 특허권자의 편

에서 문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개도국 등이 반발하여 이견이 좁혀지는데 한계가 노정되었다. 특히, 적용 대상인 개도국의 정의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waiver 적용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중국을 타겟으로 하여 세계 백신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waiver 적용을 배제하는 각주를 추가하였다. 중국은 5월 일반이사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waiver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동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각료회의 기간 동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각주 규정⁶⁾을 통해 백신 생산능력을 갖춘 개도국이라도 강제실시 규정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하도록 하고, 백신 외에 진단제와 치료제에 대한 waiver 확대 적용 여부는 각료결정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하면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역시 미증유의 위기에 WTO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WTO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의

6) For the purpose of this Decision, all developing country Members are eligible Members.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existing capacity to manufacture COVID-19 vaccines are encouraged to make a binding commitment not to avail themselves of this Decision. Such binding commitments include statements made by eligible Members to the General Council, such as those made at the General Council meeting on 10 May 2022, and will be recorded by the Council for TRIPS and will be compiled and published publicly on the WTO website.

미가 크다고 하겠다.

5. 기타

상기에서 언급한 분야 이외에 합의된 여타 선언/결정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 연장, △소규모 경제에 대한 작업계획, △TRIPS 非위반 제소 등 3건이다. 동 사항들은 관행적으로 각료회의 계기시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었으나, 다른 2개 분야와는 달리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 연장은 사뭇 다른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그간 관행이 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움(관세 부과 유예) 연장은 모두 합의를 이룰 것을 예상하면서도 각료회의 막판까지 쟁점이 되었던 분야로서, 개도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있는 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우선 확인되어야 하고, 선진-개도국간 디지털 격차(digital gap)를 좁히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역량개발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반면, 선진국들은 디지털 교역 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 체제 편입을 위해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거나 최소한 차기 각료회의 시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각료회의

중간에 차기 각료회의(MC-13) 일정에 대한 혼선(2023년 3월 說), 개도국들의 확정적인 일자 명기 요청과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불안감 등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다 결국 △2023년 12월 31일 이전 MC-13 개최시 MC-13까지 연장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후 MC-13 개최시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필요시 통상장관 또는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되었다.

그에 비해 여타 2개 분야는 쟁점 없이 합의된 바, 소규모 경제에 대한 작업계획은 소규모 국가의 무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투자 유치 및 자연재해 발생시 개도국 무역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TRIPS 非위반 제소는 TRIPS 협정 위원회에서 지재권 非위반 제소의 범위 및 형태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검토 기간 동안 회원국들에 의한 非위반 제소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IV. 맺음말 : 향후 이행계획

금번 MC-12를 통해 유례없이 풍부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이행하는 것도 상당한 일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MC-12 이후 7월 대사급회의 및 일반이사회를 통해

MC-12 성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한 바, 내년 연말 개최 예정인 차기 각료회의(MC-13)까지는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제 이행을 위해 분주할 예정이다.

WTO 개혁 관련, 일반이사회 의장(스위스 대사)은 9월 초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WTO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합의하고 공식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나, 이미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호주, 영국 등 10여 개 국가가 WTO 개혁에 대한 초안 작업을 개시하였으며, 모니터링/이행 기능을 시작으로 협상 기능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일반이사회 등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제네바에서 실무적으로 분쟁해결체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가 지난 5월부터 가동 중인 바, 2023년중 분쟁해결체제 개선을 위한 세부 문안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응고지 사무총장이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오랜만에 타결된 다자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비준인 바, 이를 독려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현재 국내적으로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교착 상태를 보인 농업 협상의

향후 진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가을에 수련회(retreat)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TRIPS waiver의 경우 백신 외에 진단제와 치료제에 대한 waiver 확대 적용 여부를 각료결정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내정되어 있어서 9월부터는 동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응고지 사무총장은 MC-12 성과에 힘입어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MC-12 성과의 조속한 이행, 여성·환경·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아젠다 확산 등을 촉구하기 위해 글로벌 아웃리치(outreach)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10월경 아시아 지역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계획을 타진하고 있으며, 동 방향 계기에 한국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비전과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MC-12의 성공이 이후 각료회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며, WTO는 여전히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적어도 금번 각료회의를 통해 WTO가 여전히 다자협상을 타결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식량 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MC-12에서 받은 지침인 WTO 개혁에도 성공적으로 부응하여 WTO가 과거에 지녔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55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법무과 사무관 최승은·임세영

I. 회의 개요

지난 2022.6.27.~7.15. 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5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Commission)가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58개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국제상공회의소(ICC), 유럽연합(EU)과 같은 관련 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과별 활동 보고 및 결과물(규범문서)의 완성·채택, 유관기구와의 협력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 사무국의 비입법적 활동 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I. 채택 문서

이번 본회의 후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 협약(제6분과),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이용과 국경간 승인에 관한 모델법(제4분과), UNCITRAL 조정규칙 권고

안(제2분과)을 최종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채택문서 별 상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 문안 완성

가. 논의 경과

2018년 제51차 UNCITRAL 본회의가 제6분과 의제로 선박경매(Judicial Sale of Ships)를 채택한 이후 2019년 제35차 회의에서부터 2022년 제40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그 문안이 완성되어 최종 채택을 앞두고 있었다.

나.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effects of a judicial sale of ship” 앞에 ‘international’ 삽입하자는 제안(중국)에 관

하여 i) 협약의 표제(title)와 표현을 통일하고, 본 협약이 선박경매의 국제적 측면만을 다루고 국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견해, ii) 본 협약이 선박경매의 효력을 다루는 데 국제적 효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 조항은 국내적 효력의 측면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견해로 분과 내 의견들이 나뉘었다.

논의 결과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안을 수정하되, 이러한 수정으로 인해 본 협약이 이른바 국내 사건(domestic cases)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별도로 주석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 제2조 정의

(a)호의 ‘judicial sale’과 관련하여 (i)의 ‘public auction’ 외에 ‘public tender’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제안(중국)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제2조 (a)호에 관한 주석에 ‘public auction(경매)’에 ‘public tender(경쟁 입찰)’ 방식에 따른 매각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제2조에 ‘선박경매의 완료(completion of judicial sale)’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 규정을 두자는 제안(독일, 프랑스)이 있었다.

“Completion of a judicial sale” means that the judicial sale of a ship is not subject to a review in the State of judicial sale and that, according to the law of that State, the time limit for seeking ordinary review has expired.

이에 대해 i) 선박경매의 완료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선박경매증서 발급과 관련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ii) 제6분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미 선박경매 완료에 관하여는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선박 경매국의 국내법령에 맡기기로 한 점, 이는 실질적으로는 통일 규정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선박 경매국이 언제 선박경매증서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점, 제안된 문구는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제4조 제4항을 기초로 한 것인데 선박경매는 본안 재판과 구별되는 집행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우위에 있어 결국 위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제1항은 시제를 현재형으로 변경하고, ‘당해’ 선박경매가 실시된 국가임을 명시하게 위해 ‘that’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1. This Convention applies only to a judicial sale of a ship if:
- (a) The judicial sale is conducted in a State Party; and
 - (b) The ship is physical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t the time of that sale.

선박경매절차는 선박 경매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규정을 선박경매의 통지를 표제로 하는 제4조 제1항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항 대신 제3조 제1항 (b)호 말미에 “as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을 추가하여 선박경매 시점이 선박 경매국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규정하자는 제안(독일)이 있었으나, 논의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4조 선박경매의 통지

선박경매의 통지가 선박경매가 시행되기 전 상당한 기간을 두고(in due time)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prior to the judicial

sale of the ship’이라고만 하면 선박경매절차 개시 시점을 통상 선박경매 통지가 발송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로 해석할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제안(독일)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항 내지 제7항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이라기보다는 제5조에 따른 선박경매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제2항의 종속 항목으로 두자는 제안(미국)이 있었지만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선박경매를 통지하여야 할 대상과 관련하여 선박 기국의 대사관/영사관을 추가하자는 제안(튀르키예)이 있었으나, i) 통지의 수령은 일반적으로 외교공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ii) 협약에서는 최소한의 필요 요건만 규정하고 추가적인 통지 대상은 각국의 법령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제6항의 언어 요건과 관련하여 서두에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e the notice to the repository’를 추가하여 해당 요건이 IMO 등록기관(Repository)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EU)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조항의 언어 요건이 i) 통지 전반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ii) IMO repository에 대한 통지에만 해당하

는 것인지에 관하여 각국 간의 이해가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이 조항이 마련된 것은 IMO가 repository 역할을 수락함에 있어 IMO의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로 된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나 부담을 질 수는 없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므로, EU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되, 주석서에서 제6항의 repository에 대한 통지를 번역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면서 제3항에 따른 통지 시에도 최소한의 정보를 번역하도록 권고하였다.

제7항의 ‘exclusively’라는 문구가 자칫 통지를 발송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자는 제안(독일)이 있었었다. 그러나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다만, ‘reliance may exclusively be place on’을 ‘it is sufficient to rely on’으로 표현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에 따라 문안을 변경하였다.

○ 제5조 선박경매증서

제2항 (e)호의 ‘the court or other public authority that conducted the judicial sale’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Appendix I과 Appendix II에서는 ‘conduct’라는 표현 대신 ‘ordering, approving or confirm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양자를 정합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

었다. 이에 대하여는 양자가 서로 다른 시점, 즉 i) 통지 발송 시점과 ii) 경매가 완료된 시점을 상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경매를 실시하는 기관과 선박경매를 명령, 승인 내지 확인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에 따라 (e)호는 그대로 ‘conducted’를 쓰기로 하고, 이에 맞춰서 제1항과 Appendix II의 3.1의 ‘the court or other public authority that ordered, approved or confirmed the judicial sale’도 ‘conducted’로 수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제7조 등기소의 조치

제1항의 ‘or subsequent purchase’부분과 관련하여 i) 해당 부분을 삭제하자는 제안(ICLRC)과 ii) 전득자와 관련하여서는 ‘or at the request of the subsequent purchaser and upon the production of the certificate and further documentation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from the purchaser to the subsequent purchaser’를 추가하여 전득자로 하여금 자신이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제안(EU)이 제출되었다.

i) 전득자가 자신이 전득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ii) 등기소로서는 ‘해당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in ac-

cordance with its regulations and procedures)’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iii) 등기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인 국가도 있고, 본 협약이 선박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어서 위 제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신 이러한 내용은 사무국이 주석서에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 제9조 선박경매 취소 및 효력정지의 관할/제10조 선박경매가 국제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관련

선박 경매를 실시하는 국가로 하여금 선박경매의 효력을 다룰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특히 EU는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기회를 보장받을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The state of judicial sale shall provide adequate procedural remedies to challenge a judicial sale before its completion under the law of the judicial sale.”

이에 대하여는 i) 구제수단의 적절성(adequacy)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ii) 본 협약이 선박경매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각국의 국내법령에 맡기고 있는 태도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iii) 약의의 채권자가 정당한 경매절차의 효력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iv) 당초 제9조와 제10조에서 선박경매의 유효성 문제는 ‘public policy’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 경매국에서 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우회하여 선박경매를 다투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반대하는 장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informal consultation을 거친 끝에 위 문제는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The judicial sale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which shall also provide the procedures for challenging the judicial sale prior to its completion and determine the time of the sale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이와 관련하여 위 조항이 협약에 가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선박경매절차에 선박경매를 다투는 새로운 구제절차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제도 하의 구제절차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임을

주석서에 명시하기로 하였다.

○ 제13조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관련

제13조 제2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제안(HccH)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사무국이 주석서에 선탁경매의 통지를 1965년 헤이그 송달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하였다.

○ 제17조 서명, 비준, 수락 및 승인

중국 정부 측은 본 협약이 채택될 경우 베이징에서 서명식을 개최하고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본 협약의 약칭을 ‘베이징 협약(Beijing Convention)’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Covid-19 상황에 따라 서명식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의 베이징 방문 가능성, 격리 등 방역조치 실시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베이징에서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 서명식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명식

은 베이징에서 하되 날짜는 공란으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 제20조 선탁경매증서의 인증

본조는 본 협약 제5조 제4항이 선탁경매증서에 일체의 공증(legalization) 및 형식(formality)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1961년 아포스티유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회원국의 경우 이를 통해 선탁경매증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새로 제안된 것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널리 받아들여진 협약이고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단한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i) 이러한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이 비회원국보다 선탁경매증서 발급에 더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ii) 아포스티유가 선탁경매증서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ex. 발급국가의 권한당국에 질의, Repository 조회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ii)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되는 선탁경매증서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여

결국 본 조항은 삭제하기로 결정되었다.

○ 제21조 유보의 절차 및 효과

제21조는 본 조항뿐만 아니라 각 유보조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효과를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안된 것이다.

제3항 후문(However, a declaration of which the depositary receives formal notification after such entry into force take effect 180 days after the date of its receipt by the depositary.)은, 제1항에서 유보 선언은 해당 국가에 협약이 발효하기 이전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모순되므로 삭제하자는 제안(캐나다)에 따라 제3항 후문은 삭제되었다.

제4항은 연방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If the depositary receives the notification of modification or withdrawal befor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State concerned, the modification or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State.

○ 제22조 발효

본 협약은 선박경매를 실시하는 국가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3개국 이상으로 엄격한 발효 요건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제3항에서 ‘conducted’는 협약의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데 불충분한 단어이므로, 이를 경매 개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ordered or approved’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 전문

전문은 선박경매의 결과 ‘clean title’을 취득하기만 하면 집행권원이 maritime claim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본 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수정되었다. 법제에 따라서는 선박경매가 권리의 실현 외에 담보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전문이 지나치게 장황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이용과 국경간 승인에 관한 모델법(제4분과)

가. 논의 경과

2016년 제49차 UNCITRAL 본회의가 제

4분과 의제로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를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제4분과는 2016년 제55차 회의에서부터 2022년 제6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의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 주요 내용

○ 제6조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6조(d)와 제14조 제1항(c)의 ‘subscribers and third parties’를 ‘subscribers, relying parties and other third parties’로 수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의 강행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 제9조 신원관리 사용자의 신원

제9조와 제10조가 적절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9조의 ‘method’ 앞에 ‘reliable’을 추가하고, ‘electronic identification’ 앞에 ‘identity proofing’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reliable method’라는 표현이 신뢰도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싱가포르는 신뢰도는

제10조에 의한 상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에 분과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조항 끝에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paragraph 1’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제10조 제1항은 신뢰도에 관한 사전적 평가(ex post)만을 규율하므로 사후적 평가(ex ante)를 규정한 제10조 제4항도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의 결과, 제9조에 관하여 주요 의견 전부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Subject to article 2, paragraph 3, where the law requires the identification of a person for a particular purpose,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identification, that requirement is met with respect to identity management services if a reliable meth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paragraph 1, or article 10, paragraph 4, is used for the identity proofing and electronic identification of the person for that purpose.

신뢰서비스에 적용되는 제16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여 본문 중에서 제22조 제1항 및 제4항을 인용하기로 하였다.

○ 제10조 신원관리 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제10조 제1항(b)는 신원관리 서비스가 제9조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그 판단을 법원이 하는 것(by or before a court)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이 ‘by or before a court’를 추가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판단 주체가 반드시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일 수도 있고 일부 입법례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by or before a court or competent adjudicative body’로 규정하여 법원 외 주체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문안을 수정하였다.

최종 문안은 다음과 같다.

(b) Deemed to be as reliable as appropriate if proven in fact by or before a court or competent adjudicative body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 described in article 9,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 제14조 신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4조 제1항(c)와 관련하여 ‘relying party’도 operation rule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subscribers and third parties’를 ‘subscribers, relying parties and other third parties’로 문안을 수정하였다.

○ 제22조 신뢰서비스의 신뢰성 요건

제22조 제1항(b)를 제10조 제1항(b)와 동일하게 수정(‘by or before a court or competent adjudicative body’를 추가)하는 제안에 대하여 싱가포르의 전자서명의 신뢰성 요건에 법원 등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전자서명의 기능적 등가성을 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협약(ECC) 제9조 제3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ECC 제9조 제3항은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이 기능적으로 등가함을 계약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신뢰서비스와는 맥락이 다르다는 의견, 모델법의 규정은 ECC와 상반되지 않으며 상호 보충 가능하다는 의견, UNCITRAL 규범 간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규범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고 모델법이 발전된 형태의 규범이라는 반론 등이 제기되었다.

논의 끝에 싱가포르의 반대의견은 채택되지 않았고 제22조도 제10조와 같이 원래 수정제안에 따라 변경되었다.

○ 제25조 전자 인증의 국경간 승인

제25조 제1항의 서두에 ‘the result of’를

추가하고, 제25조의 ‘reliability’를 전부 ‘assurance’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국경간 승인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shall’을 ‘may’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은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협약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음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제1항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assurance)’의 기준이 승인국보다 낮은 수준의 신뢰성을 승인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안으로 ‘a substantially equivalent or higher level’이 제시되었다.

논의 끝에 원안과 대안을 모두 규정에 추가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1. The result of electronic identification provided outside [the enacting jurisdiction] shall have the same legal effect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as electronic identification provided in [the enacting jurisdiction] if the method used by the identity management system,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identity credential, as appropriate, offers:
 - (a) At least an equivalent level of assurance, where the assurance levels

recognized by such jurisdictions are identical; or

- (b) Substantially equivalent or higher level of assurance, in all other cases.

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satisfaction of paragraph 1, regard shall be had to recog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3. An identity management system, identity management service or identity credential shall be presumed to satisfy paragraph 1 if [the person, organ or authority specified by the enacting jurisdiction pursuant to article 11] has determined the equivalence, taking into account article 10, paragraph 2.

다만, 제25조는 상대적 기준에 불과하며 결국 기술에 관한 규범이 마련되어야 당사국이 타국의 기술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회원국이 공감을 표함에 따라 해당 지적을 해설서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3. UNCITRAL 조정규칙 관련 조정 기관 지원을 위한 권고안 완성 및 채택

가. 논의 경과

권고안은 제54차 UNCITRAL 본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UNCITRAL 조정규칙(조정 의 UNCITRAL Conciliation Rules를 싱가포르조정협약과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 법(2018년)의 내용을 반영한 것)과 관련하여, 조정규칙을 기관 차원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치(조정절차 관리, 행정 및 송달 관련 편의 제공, 조정인 선정에 관한 노력)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나. 주요 내용

○ 조정규칙 제1조 제4항

조정인이 선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조정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정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당사자 자치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in consultation with the mediator where one has been appointed, to vary any provision of the [name of the institutional rule] at any time.

이에 따라 위 권고안 제1문과 제2문을 합쳐서 다음과 같은 수정문안이 제안되었다.

○ 조정규칙 제8조 제2항

싱가포르조정협약 제4조에서 화해합의 (Settlement Agreement)가 조정에 의해 도출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기관 이 재량(may)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 (shall)를 부담한다고 명시할 것이 제안되었다.

III. 분과별 논의 동향

1. 제1분과(중소기업 신용공여)

지난 제36차 및 제37차 실무회의 결과 보고서가 이번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며 이 건 없이 채택되었다.

채택 과정에서 중규모기업 관련 내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되 우선 소규모기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자는 실무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향후 성안될 문서의 형식은 미정이지만 그 문서의 목적은 중소기업 신용 공여 관련 법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이 강조되었다. 특히 태국 대표단은 이번 보고서의 채택을 지지하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펀딩(자금조달)의 중요성 및 관련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제1실무회의의 논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2. 제2분과(분쟁해결)

지난 제74차 및 제75차(콜로키움) 회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제74차 회의의 성과로는 UNCITRAL 신속중재규칙 해설서 완성이 언급되었고, 제75차 회의와 관련하여 일본, 이스라엘, 스페인, 미국, 싱가포르 등 많은 대표단이 지난 콜로키움이 매우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었다고 평가하며 결과보고서 채택을 지지하였다. 특히 제4분과의 논의 주제(전자상거래)와의 연관성 및 연계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3. 제5분과(도산법제)

지난 제59차 및 제60차 회의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제59차 회의에서는 「소규모기업을 위한 도산법 입법지침」의 주석(Commentary)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으로써 이 입법지침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바¹⁾, 이번 본회의에서 이러한 성과가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

두 신규 의제(도산절차의 준거법 및 민

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에 대해서는 주제의 복잡성과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실무회의가 핵심 쟁점들을 추출하고 논의의 방향을 정립해나간 점이 높이 평가됨과 동시에, UNIDROIT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 권고되었다.

지난 제60차 회의에서 검토가 완료되어 문안이 확정된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 사법적 관점」의 2차 개정본에 대해서는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대표단들의 지지와 함께 발간 및 배포가 확정되었다.

IV. 향후 작업반 논의 계획(미래 의제 등)

진행 중인 작업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과(제4분과, 제6분과)들이 존재함에 따라 신규작업에 대한 예비조사 필요성 및 향후 작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각 분과별 작업주제 외에 다양한 이슈들이 차기 작업주제 선정 및 논의의 시의성 등을 이유로 UNCITRAL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

1) 제54차 본회의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입법지침은 기존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제5장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UNCITRAL 중소기업 시리즈(UNCITRAL MSMEs text series)의 하나로써 공개될 것임이 다시 한번 안내되었다.

동향 및 일정한 성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향후 논의 가능한 분과별 작업주제로서 특히 창고증권²⁾ 및 유통성 복합운송증권 관련 규범 성안이 검토되었으며, 제1분과 및 제6분과의 차기 주제로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정해진 향후 논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제1실무회의) 중소기업 신용공여에 관한 논의 계속
- (제2실무회의) △조기기각 및 선결적 결정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 문안 마련, △기술 관련 분쟁 해결 및 재정 (Adjudication)에 대한 논의 작업 준비 (모델조항 등)
- (제3실무회의) 위임내용에 따라 ISDS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계속
- (제4실무회의) △기준 UNCITRAL 규범 중 자동 계약체결(automated contracting) 관련 조항의 정리 및 적절한 개정, △보다 광범위한 쟁점 포섭을 위한 조항 마련(제63차 제4실무회의에서 정리된 내용 포함) 등의 단계적 수행
- (제5실무회의) 도산절차에서의 민사

적 자산 추적 및 회복, 도산절차의 준거법에 대한 논의 계속

- (제6실무회의) 유통가능한 복합운송증권에 대한 논의 착수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거래규범의 부재 및 불분명성 해소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팬데믹이 국제거래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을 지속할 것이 요청되었다.

V. 기타 활동 성과 보고

1. 유관기구와의 협력 활동

사무국은 UNIDROIT, HccH, 세계은행 등 다양한 유관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공유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작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이번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이는 UNCITRAL이 총회(General Assembly)로부터 위임받은 활동 사항에 해당하며 국제거래법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서 작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임이 언급되었다.

2) 현재 UNIDROIT에서 창고증권에 관한 모델법(안)을 마련 중이며, 해당 작업 완료 후 UNCITRAL 제1분과에서 신규 주제로 채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협력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UNIDROIT) 주로 담보계약 및 디지털 경제 등 다수의 주제에 관하여 협력해왔으며, △ 참고증권 관련 모델법 및 구체적인 입안 가이드에 대한 작업 계획(2020~2024), △ 기타 두 기구의 공통 관심 주제(디지털 자산과 private law에 관한 원칙, 농업기업의 법적 구조 등)에 관한 작업에 대해 공유함
- (HCCH) 디지털 경제 및 온라인 분쟁 해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UNCITRAL과 함께 논의 중
- (세계은행) 「효과적인 지급불능 및 채권·채무자 제도를 위한 원칙(World Bank Principles for Effective Insolvency and Creditor/Debtor Regimes)」의 개정(2021)과 관련한 협업 역시 주요한 성과로 언급되었는데, 특히 이 원칙은 UNCITRAL 도산규범 성안 과정에서 중요하게 언급·인용되는 내용임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담보거래 지원 및 조정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국제사법 분야의 발전과 관련 규범의 확산을 위해 다른 유관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을 공유함

- 그 밖에 UN 내외부의 다양한 기관단체(UNCTAD, UNODC, OECD 및 WTO 등)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 작업의 내용들이 이번 본회의에 보고됨

2. 다른 국제기구 문서 채택

본회의는 지금까지 ICC에서 성안해온 많은 규범문서들을 승인해왔으며, 2011년 제44차 본회의에서는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2010년 개정본, 일명 URDG 758)」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URDG 758과 관련한 모범 실무 관행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International Standard Demand Guarantee Practice(ISDGP)를 승인하였는데, 해당 문서는 관련 실무 현황 및 그동안의 발전 내용 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사무국의 비입법적 활동 성과

직접적인 규범 성안 작업 외에 기존 UNCITRAL 문서의 채택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사무국의 다양한 활동성과(비입법적 활동)들이 보고되었다.

팬데믹 동안 UNCITRAL 규범에 대한 법제정비 및 역량강화 지원 수요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부응하여 많은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RCAP)의 지난 1년간 활동 내용이 공유되었으며, 이에 우리 대표단은 RCAP 설립 10주년 축하와 아울러 아태지역 국가 대상 UNCITRAL 규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우리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CLOUT의 개선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정비 및 인터페이스 변경(기능 추가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무국은 각 제안들에는 동의하나 예산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4. 부대행사 등

이번 본회의에서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Side Event)가 주 UN대한민국대표부, 법무부, UNCITRAL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고(7.7.), △회의 마지

막 날(7.14.)에는 국제도산모델법 채택 25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특히 디지털 통상 규범 관련 행사는 양자, 지역,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여하는 관계자 간의 정보 교환, UNCITRAL 규범 텍스트가 WTO, DEPA와 같은 통상협정의 법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Anna Joubin-Bret UNCITRAL 사무총장, Maria-Francesca Spatolisano(UN부사무총장), 배종인 차석대사(주UN대표부)가 환영사 및 개회사를 하였다. 이어 일본, 싱가포르, 칠레 등의 통상 담당 관료, UNCTAD, WTO, World Economic Forum(WEF) 등 관계자들이 디지털 경제의 트렌드, 디지털 통상 관련 협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국 대표단의 박정현 국제법무과장(법무부)이 “Where UNCITRAL encounters Digital Trade Agreements: Korea’s Experience”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통상법률」 연구윤리규정

2009. 6. 30 제정

제1장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게재할 논문과 관련하여 논문의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상법률」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저자 등의 연구윤리

제1절 저자의 연구윤리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 등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 서문, 상의 등에서 감사를 적절하게 표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연구결과에 대한 책임)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결과물의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의 금지)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출판예정이거나 출판심사 중인 연구결과 포함)를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결과를 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여타 학술지에 중복해서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박사학위 논문 포함)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나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별지1)의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투고 및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본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편집위원의 편집방법) ①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통지 의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등

제13조(서약)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윤리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각각 (별지2)와 (별지3)의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①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는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심사위원, 논문연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에 의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사실을 알린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칙) ①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의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5인 이상의 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 각 위원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합의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7조(조사결과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통상법률」 제00호)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귀중

논문제목 :

연구윤리규정준수 확인서

저자(들)은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저자의 지적 창작이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음
2. 저자는 투고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하였으며, 투고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투고논문은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바 없음
4. 투고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를 위하여 투고하지 않았고, 투고할 계획이 없음
5. 「통상법률」 발행인은 투고논문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제기, 고소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

논문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서

저자(들)은 본 논문이 「통상법률」에 게재될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을 「통상법률」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저 자	성 명	소 속	이메일(연락처)	위임여부(O,X)	서 명
제 1 저 자					
교 신 저 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별지2)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편집위원용)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편집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함
2.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
이나 사적 친분과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취급함
3.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
4. 투고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5.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함

20 년 월 일

편집위원 ○ ○ ○ ①인

(별지3)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심사위원용) (2009. 6. 30. 신설)

「통상법률」 귀중

본인은 「통상법률」의 심사위원으로서 「통상법률」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음
2. 심사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
편집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사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함
4. 심사를 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5. 심사논문의 중복투고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림
6.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 부정인용 및 참조를 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통상법률」 원고 심사 및 편집 규정

제정 2003년 1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발간하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심사대상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통상법률」 원고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통상법률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통상법률」誌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원고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통상법률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해당분야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해당분야의 법조실무경력 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
 2. 원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및 전문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 취소 여부 결정
 4. 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법률」誌 발간을 위한 기본 방침과 편집방향
 2. 기획논단 주제 선정
 3. 기타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편집위원의 위촉
 2. 제4조 제4항에 따른 간사 및 편집자문위원의 지명
 3. 제6조 제1항의 편집회의 주재
 4.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5. 제8조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
 6. 제11조 제4항에 따른 원고 게재 여부의 결정
 7. 기타 「통상법률」誌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재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자문위원으로서의 임기는 편집위원 임기 만료시 함께 종료된다.
- ② 편집위원이 임기의 개시에 앞서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임기 중 타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임자 충원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미 착수한 업무는 충원 후에도 완결한다.
- ④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임무)

- ① 편집위원은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사 및 「통상법률」誌의 편집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 편집자문위원은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법률」誌의 발간과 관련한 추가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장 원고의 심사

- 제9조(심사 대상) ① 「통상법률」誌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시론,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통상법률」誌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은 「통상법률」誌의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국내외 법학교수,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 법조실무 경력 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 ④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지체없이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 결과를 신속히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의 선정이나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회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 1. 「통상법률」 원고작성방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 6. 연구윤리준수
- 7. 국문초록 및 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 8.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통상법률」誌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원고와 심사결과서 양식,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양식을 송부한다.

- ② 투고된 원고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논문의 내용 중 투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③ 논문의 심사는 제9조의 심사 기준에 따라 행하되 원고를 송부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심사 기간은 1주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심사 의뢰 후 3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심사위원을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심사 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서 원본 파일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법무부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보고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 가능한 때: 게재 가능
 2. 수정·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수정 후 게재
 3. 수정·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한 때: 게재 유보
 4. 전면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게재가 불가능한 때: 게재 불가
- ② 심사 결과는 <별표>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유보’ 의견을 내거나,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제출받아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게재 유보’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정 또는 보완의 심사 결과 내용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투고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 제한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유보에 대한 이의제기)

- ① 투고자는 수정 후 게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수정·보완 요구 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투고자는 게재 유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정거부사유서를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 유보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게재 불가에 대한 이의제기) ① 투고논문에 대하여 게재 불가 결정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이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전항의 이의를 제기하면 3일 이내에 이의 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재심사에 회부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4 장 원고의 게재 등

제17조(원고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판정한 원고는 「통상법률」誌에 게재한다.

② 「통상법률」誌의 내용은 법무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는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통상법률」誌는 매년 2, 5, 8, 11월 20일에 발행한다. 단, 발행예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발행한다.

제18조(자료의 전송) ① 편집위원회는 「통상법률」誌를 법률문화 발전, 학술진흥 기여 기타 필요한 경우 데이터화하여 각종 도서관 등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결정 즉시 투고자에게 자료 전송 및 제공에 대한 의사를 물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3년 1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현재 재직 중인 편집위원들은 재위촉되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통상법률」 원고 작성 방법

제1조(원고의 양식)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요건)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원고 작성 요령) ① 원고는 연구논문, 사례연구, 연구자료, 해외동향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원고지 150매 내외 (A4 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목록, 국문 초록, 영문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 제목(국문 및 영문 제목 모두 표기), 필자의 성명(괄호 안에 영문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 은행계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는 주 저자(책임 연구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하여,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서로 표시한다.

⑥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2. 본 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3. 각 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⑦ 목차는 I.,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⑧ 직접 인용할 때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⑨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단행본 : 저자명, 서명, 면수, 출판연도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간행연월

3. 판 례 : 대법원 1900. 00. 00. 선고 00다0000판결(법원공보 1900년, 000면) 또는
대판 1900. 00. 00, 00다0000
 4. 외국 출전 및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단, 일본 판결의 경우 선고 일에 평성, 소화 등 연호를 쓸 경우 괄호 안에
서기를 표시한다.
 5. 영문성명, 논문명, 서명 등은 각 단어의 첫 자 외에는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
한다.
 - ⑩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표기하고,
로마자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별도의 ‘p.’와 같은 표시를
생략하고 숫자만을 표기하며,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을 사용한다.
 - ⑪ 외국 법률이나 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예:
가석방제도(parole system)]
 - ⑫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기재한다.
 1. 저자명, 서명, 출판관련사항은 각 쉽표.로 구분한다.
 2. 출판관련사항의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서양인 저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성을 먼저 쓰고, 공저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저자만 성을 먼저 쓴다.
 4. 동일 저자가 작성한 문헌이 복수인 경우, 문헌이 출판된 연도순에 의하여 나
열한다.
 - ⑬ 원고 뒷부분에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words, 국문 및 영문)를 10개
내외로 기재한다.
 - ⑭ 기타 논문작성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
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
- 제4조(원고의 제출) 작성 완료한 논문은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편집위원회 간사가
지정한 전자우편(e-mail)주소로 송부하거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출한다.

[편집위원장]

박정현 (국제법무과장)

[편집위원]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준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김인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담당관)

조성준 (일리노이공과대 시카고 켄트로스쿨 교수)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 간 지 통 상 법 률

2022년 9월 30일 발행(통권 제156호)

1994년 5월 20일 등록(97-10-5-11)

발간등록번호 : 11-1270000-000225-07

ISSN : 1598-4915

eISSN : 2765-5962

발행인 : 법무부장관 한 동 훈

편집인 : 법무실장 직무대리 권 순 정

발행처 : 법무부 / 편집실 : 국제법무과 / 전화 : 02-2110-3660 / FAX : 02-2110-0327

주 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4호

인 쇄 : 성 진 사 : 031-388-4485

[비매품]

INTERNATIONAL TRADE LAW

Vol. 156

September 30, 2022

Publisher Han, Dong Hoon / Minister of Justice

Editor Lee, Sang-Gap / Deputy Minister for Legal Affairs

Edited in

International Legal Affairs Division

Published quarterly by

Ministry of Justice

“통상법률”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